

여순사건 68주기 학술토론회

여순사건 새로운 모색과 시작

때 : 2016년 10월 21일(금) 오후 3시
곳 :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대회의실

공동주관 :  5.18 기념재단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후 원 : 민주연구단체협의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식 순

개회식

3:00-3:05 (05분)	환영인사/개회사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3:05-3:10 (05분)	내빈 소개	사회자 : 염동필
3:10-3:25 (15분)	축사	여순사건유족협의회 회장
		순천유족회장
		여수유족회장
3:25-3:30 (05분)	사회자 및 토론자 소개	사회자

주제 1. (한국사회 주요 대중운동의 실제와 과제, 사회자 / 이연창)

3:30-4:10 (40분)	토론 1. 지정토론	토론자당 10분씩, 총 4명
4:10-4:30 (20분)	자유토론	전원 참여
4:30-4:40 (10분)	휴식	

주제 2. (특별법 새로운 모색과 시작, 사회자 / 이오성)

4:40-5:10 (30분)	토론 2. 지정토론	토론자당 10분씩, 총 3명
5:10-5:30 (20분)	자유토론	전원 참여

종합토론 (사회자 / 주철희)

5:30-6:00 (30분)	종합토론	전원 참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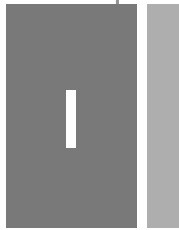
차례 Contents

I 한국사회 주요 대중운동의 실제와 과제

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대중운동 (이재봉)	3
10월항쟁과 근현대사 (함종호)	7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이영일)	2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안종철)	40

II 특별법 새로운 모색과 시작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대한 새로운 모색 (장완익)	65
5·18특별법 제정 운동 (박강배)	70
여순사건의 소송 현황과 미신청 사례 (황순경)	81



한국사회 주요 대중운동의 실제와 과제

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대중운동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 남이랑북이랑 통일운동 대표)

1. 1940년대의 통일운동

1947년 유엔 총회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기권한 상태에서 한반도 총선을 관리할 유엔한반도임시위원회 (UNTCOK)를 설립하자는 미국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반대하자 이남에서만 미군정이 계획한대로 1948년 5월 총선을 실시할 것을 승인했다. 다수의 한인들은 이 총선 계획을 반대했다. 미국이 소련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남쪽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 1947년 3월 제주의 다양한 단체들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두어 번 펼쳤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남한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제주반란’ 또는 ‘제주(4.3)항쟁’이다. 당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매국적 단독선거에 결사반대하며, 인민을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섰다. 우리는 미국 식민자들과 그들의 주구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인민을 살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둘째, 1948년 10월 여수 지역 군인들이 제주항쟁을 진압하라는 상부 명령에 불복하고 제주로의 파병을 반대하며 봉기하기 시작했다. 소위 ‘여.순반란’ 또는 ‘여수.순천사건’이다. 이에 대해, 1948년 11월 미군 정보당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반란 지도자들은 투쟁 목표가 외세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승만 대통령과 이범석 국무총리가 단독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했다. 이 지도자들에 의하면, 제주도 주민

들은 1948년 4월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고 그들의 조국을 지키는 데 목숨을 바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수의 군인들이 제주도 주민들을 살해하기를 거부하며 제주로 파병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 1960년대의 통일운동

1950년대엔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통일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웠지만, 1960년대엔 4월혁명에 따른 민주화의 영향으로 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1960년 6월 재미동포 김용중과 일본에서 귀국한 김삼규에 의해 시작된 통일 논의는 7.29 총선을 계기로 진보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곧 이어 언론과 문단 및 학원으로 폭넓게 확산되었다.

1960년 가을, 진보정당, 종교단체, 학생조직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민족 자주통일 중앙협의회>라는 통일운동 단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한반도가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평화, 민주주의 원칙 아래 중립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때부터 많은 다른 단체들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통일운동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통일운동은 날로 확산되어 1961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각 대학교 및 20여 고등학교에 까지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되었고, 사대당을 비롯한 혁신 세력의 일부는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을 주장하거나 남북교류를 촉구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는 통일운동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거나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용공이적’ 행위로 체포했다. 박정희 군부는 재빨리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체계적인 감시 장치를 구축했고 굳건하고 극단적인 반공정책을 폈다. 군사정권은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을 해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했다.

3. 1970년대의 통일운동

1970년대는 한국정치에서 암흑의 시대였다. 박정희는 기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덧붙여 긴급조치법을 발동하며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독재

를 펼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일단의 혁명가들이 비밀리에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남민전)>을 결성해,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와 그들의 허수아비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다. 1979년 80여명의 조직원들이 체포될 때까지 그들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선전운동을 펼쳐나갔다.

4. 1980년대의 통일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1980년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은 민중운동의 발전이었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외세의 영향 없이 민족통일을 이루며,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사실상 독립을 성취하자는 내용이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과 함께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다.

1988년 6월엔 남한 정부가 대학생들의 통일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자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전투경찰과 충돌했다. 충돌 과정에서 학생들이 외친 구호 가운데 하나는 “분단을 강요하는 양키를 몰아내자” 였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대로 미국이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 신문은 학생들의 “궁극적 목표가 통일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된 정권 아래서 자주를 성취하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1980년대 말 통일운동은 ‘반미 반전반핵 평화 투쟁’ 및 통일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연결되었다.

5. 1990년대의 통일운동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집권 첫해에 정치 자유화, 경제 정의, 사회 개혁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면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야당은 허를 찔렸고 반정부 세력은 투쟁의 초점을 잃었다. 정치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온 투쟁적 민중운동이 약화하고, 사회복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비폭력적 시민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정치문화

특히 ‘저항문화’가 폭력적 대중시위에서 비폭력적 문화투쟁으로 바뀌어갔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에 가장 강력하고 잘 조직된 민간 통일운동은 남북한 공동의 연례행사였던 범민족대회였다. 다양한 민주화운동 및 통일운동 단체들이 외세의 개입과 지배를 거부하며 민중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 시작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100년만의 물난리’가 일어나고 극심한 식량난이 알려지면서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운동이 봇물처럼 일어났다. 대북지원이 통일운동이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남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통일운동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6. 2000년대의 통일운동

2000년 6월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에 대한 열기를 맘껏 고조시켰다. 통일이 금세 이루어질 듯 한 분위기도 연출되었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일운동단체가 생겨났는데, 가장 대중적인 통일운동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남북 교류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북 교류 사업이 축소되고 통일운동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남북 관계를 쾅쾅 얼어붙게 만들었고 대북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통일운동 역시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10월항쟁과 근현대사

-10월항쟁 복권과 특별법 제정

함중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부이사장)

1. 머리말

2009년 12월 4일, 대구에서 ‘10월항쟁유족회’가 결성된다. 그동안 학자들의 연구논문에서 가끔 등장하거나 대구에서 진보단체들이 기념식을 통해 추모하는 경우는 있으나 10월항쟁이 유족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3월 30일, 때마침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실위)는 10월항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다. 이는 국가가 10월항쟁 진압과정에 있었던 공권력의 부당성을 이해하고 시인한 것이다. 진실위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재억 등이 1946년 10월 초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의 기간에 대구,경북의 각 지역에서 소위 ‘대구10월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살해한 현지의 경찰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에는 미군정이 남한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으므로 경찰의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군정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월 항쟁 희생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이러한 판단은 가히 ‘역사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진화위에서는 10월 항쟁 피해자들을 추가 조사하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명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당 유족들이 재판을 통해 개인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16년 7월 2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는 <대구 10월 항쟁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0월 항쟁 진상규명 운동은 그 지역적 토대가 현재로서는 대구로 국한되어 있고 대구의 정서가 보수적인 탓으로 10월 항쟁을 역사적으로 되새기고 추모하는 활동이 규모 있게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10월 항쟁은 ‘대구폭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즉 ‘빨갱이들이 경찰을 잔인하게 죽인 폭동’ 정도로 극히 소수가 알고 있었다. 항쟁의 범위도 대구 일원에서 일어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그 사건이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항쟁이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수준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그리고 대구지역의 보수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도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 한계를 짚어서 이후 바람직한 운동방향을 마련해야 한 단계에 이르렀다.

2. 10월 항쟁 발생의 구조적 계기

10월 항쟁은 해방직후 일제식민지 유제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민주의 과제 해결을 둘러싸고, 수구적인 미군정과 변혁적 해결을 도모하는 민족민주세력과의 대립이 구조적 계기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 민족과제, 민주주의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첫째는 국가형성이다. 당시 자주적 민족공동체 수립의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점령하면서 이를 포고령으로 금지하고 미국의 식민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둘째는 식민지 관료기구의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파를 제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군정이 친일파를 미국의 식민지 구축의 앞잡이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권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중무장시켜 민중들의 권력 접근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는 민중들의 분노를 사는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다. 셋째는 토지문제의 해결이다. 일제강점기 아래 봉건적인 지주-소작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는 자주적 근대국가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주와 친일우익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민족민주세

력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였다. 미군정은 지주와 친일파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당시 옥답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귀속된 토지조차 분배하지 않고 미군정이 설립한 신한공사로 편입한다. 넷째 일제가 남긴 귀속재산에 대한 민중적 점유와 관리를 배제하여 민중들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친일세력과 우익에게 배분한다.

미국은 친일세력, 특히 친일경찰과 친일관료를 주축으로 하여 친미국가를 수립하고자 의도하게 되면서 일제 아래에서부터 요구해온 민족민주적 요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0월 항쟁은 해방직후 일제식민지 유제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민주의 과제 해결을 둘러싸고, 수구적인 미군정과 변혁적 해결을 도모하는 민족민주세력과의 대립이 구조적 계기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 민족과제, 민주주의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첫째는 국가형성이다. 당시 주로 사회주의 세력이 일제강점기 아래 독립운동을 지속하여 국가형성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민족통일전선에 의해 지역에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인민위원회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공화국(여운형)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점령하면서 이를 포고령으로 금지하고 미국의 식민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둘째는 식민지 관료기구의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파를 제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군정이 친일파를 미국의 식민지 구축의 앞잡이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권시켰다. 이는 민중들의 분노를 사는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다. 셋째는 토지문제의 해결이다. 일제강점기 아래 봉건적인 지주-소작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는 자주적 근대국가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주와 친일우익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민족통일전선(민주주의민족전선)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지주와 친일파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귀속된 토지조차 분배하지 않고 미군정이 설립한 신한공사로 편입한다. 넷째 일제가 남긴 귀속재산에 대한 민중적 점유와 관리를 배제하여 민중들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친일세력과 우익에게 배분한다.

해방직후는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둘러싸고 미군정과 민족민주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민족민주세력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가로막고 식민지국가를 건설하려는 미군정에 맞서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노선을 채택한다. 이는 2차 대전 끝머리에 세계적으로 형성된 미-소협력노선의 동북아시아 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소련 사이의 협력 관계는 불안정한 것이었고,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 공공연한 대소봉쇄정책으로 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국제정세였다. 당시 민족민주세력은 이러한 미국을 ‘어르고 달래며’ 미-소간의 약속인 ‘임시민주정부수립’을 강제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속내를 드러내며 자신의 야욕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무단으로, 체계적으로 탄압했다. 이러한 대립은 한국문제가 47년 9월 유엔으로 이관되고 48년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4.3 및 여순항쟁 등 내전으로 발전한다. 미군정과 민족민주세력의 구조적 대립은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정과 친일세력의 승리로 종료한다.

집회·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민주노동법 등 근로대중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미군정의 독주 과정에서 식량정책에 혼돈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식량가격이 최고 20배씩 폭등하기도 한다. 이는 미군정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자유시장 정책 때문인데 부작용이 나타나자 반대로 농민에게는 식량 강제 수집을 감행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배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제 식량문제는 도시에서는 기아시위 형태의 저항으로 나타나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산발적인 저항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잘못된 미군정에 대한 최초의 총체적인 저항이 바로 10월항쟁이다. 즉 민족민주적 과제 해결을 위한 민중항쟁인 것이다.

3. 항쟁의 확산과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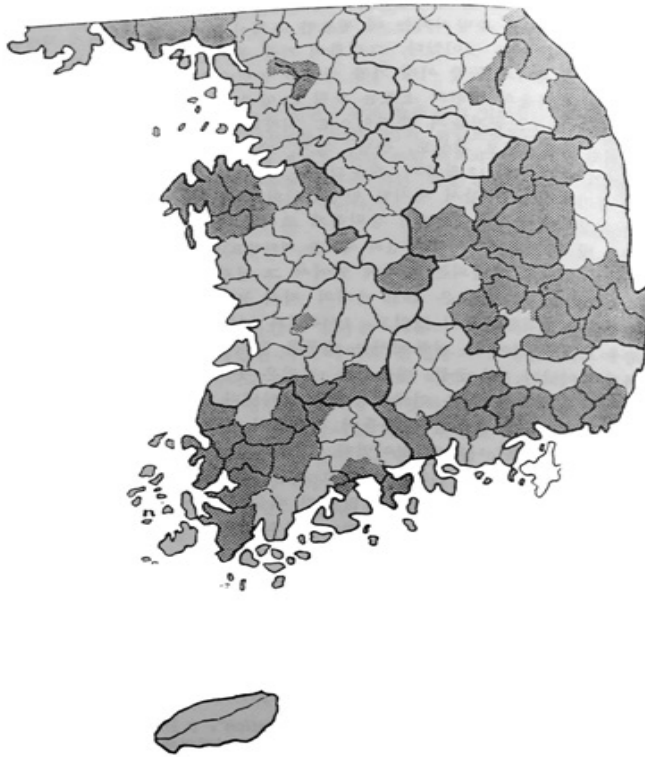
<항쟁의 발발>

항쟁은 46년 9.23총파업에서 시작된다. 대구에서는 9월 26일에 지역총파업이 단행된다. 이 열기는 이어져 9월 30일에도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들이 사망하자 10월 1일 전 시민이 봉기한다. 한편에서는 식량배급이 중단된 가운데 도시 서민들이 이미 년 초부터 ‘기아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역시 항쟁 발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항쟁이 신속하게 전민항쟁의

형태로 발전한 것은 그만큼 미군정과 친일파의 지배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 항쟁은 전국으로, 특히 농민들의 항쟁으로 발전한다.

<항쟁의 확산>

대구의 무장 시위대는 차량을 타고 경북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면서 시위를 선동한다. 칠곡, 약목과 영천으로 번지고 선산 등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다가 경남으로 충북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마지막 전남에서 불꽃을 태운다. 항쟁이 대구를 벗어나서부터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래서 이 항쟁을 농민항쟁, 추수봉기라고도 한다. 브루스커밍스의 기록으로 보면 전국 80여개 군에서 항쟁이 있었다.(이는 당시 미군정 및 경찰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며, 사실상 이남 전역에 항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6년 12월말까지 항쟁은 전국에서 계속되고 1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항쟁이 규모에 비해 희생자가 적은 것은 당시까지도 미군정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규모와 민족사적 맥락으로 볼 때 갑오농민전쟁에 버금가는 우리 민족사 2대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6〉 1946년 9~12월 농민봉기도

(1946년 9-12월 농민봉기도) 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커밍스

<항쟁의 좌절>

미군정은 항쟁지역에 미전술군과 경찰을 파견하여 진압한다. 미전술군이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민보단 등 극우폭력세력이 주민들을 무단적으로 탄압한다. 미군정은 경찰과 극우세력을 동원하여 진압에 성공함으로써 이남 전 지역에 대한 안정적 통치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진압과정의 무단성으로 인해 민중들에게 깊은 원한을 사게 된다. 미군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했던 민중들은 친일경찰과 폭력배를 앞세운 그들의 통치의 본질을 온 몸으로 느꼈던 것이다.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경찰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무단적 탄압으로 인한 국민의 원한은 깊어져 이후 큰 비극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즉 미군정은 더욱 경찰물리력에 의존하게 되고 민중들의 원한은 그

만큼 커져만 갔던 것이다. 급진세력은 민중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으로 들어가 ‘야산대’를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사실상 내전이 시작된다. 이는 제주4.3, 여순사건으로 이어진다.

4. 편견

< 10월항쟁은 잔인한 폭동이다??? >

결론부터 미리 언급한다면, 10월항쟁은 민족해방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민중항쟁, 민주항쟁이며 ‘목표와 대안 없는 난동’을 의미하는 ‘폭동’은 결코 아니다. ‘잔인하다’는 평가 역시 일방적이다. 대구 인근을 중심으로 일부 경찰과 관료에 대한 과격할 살해가 있었지만, 그들이 일제강점기부터 민중을 혹독하게 탄압하고 일제의 앞잡이로 징용과 정신대 보내기에 앞장선 반민족, 반민중, 일상적 폭력세력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8.15해방 즉시 보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신기하지 않을까? 더구나 항쟁이 진행되면서 진압세력의 잔인함은 극치에 이르렀는데,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당한 평가가 아닐까?

사실 당시 민중들의 분노의 폭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원인은 친일 관료, 경찰의 재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8.15해방으로 두려움에 떨던 친일관료와 경찰은 근무지를 버리고 도망 다니기에 급급하다가 맥아더의 포고령 1호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령에 의해 직장에 원상복귀하고 다시 일제 하 통치를 방불케 하는 억압 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은 농촌에서의 식량수집과 도시에서 배급과정에 투입되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다.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 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 까지 일상적인 직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이때 대구에서 파업하던 노동자가 경찰에게 총격을 당하여 사망하자 대구시민들은 이를 반일주권운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해방 이후로 이룩한 자주적 성과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폭동이 아니라 항쟁이다.

<이 무모한 항쟁으로 인해 미군정과 친일경찰과 관료와의 결속이 강화되고 친일경찰의 지배가 확고하게 되며 국가건설과정에서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자주적 흐름이 배척된다??? >

10월 항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10월 항쟁이 친일경찰과 관료가 준동하게 된 기회를 주게 되고 미군정이 친일파를 권력의 파트너로 삼게 된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언급한다. 이는 매우 앞뒤가 바뀐 평가이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미군정이 친일경찰과 관료를 파트너로 삼아 해방 후 우리 민중의 자주적 흐름을 철저히 배제하고 와해시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저항이 발생하였으며 이의 총화가 10월 항쟁인 것이다.

해방이 되자 연합국민 미군을 조선민중은 절대적으로 환영한다. 대구에서도 좌, 우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한다. 그들끼리 먼저 미군환영하기 경쟁을 벌인다. 심지어는 대구에 진주한 미군정의 도 공보과

장 던컨은 ‘환영 범람에 경고’ 하는 이색성명을 낸다. 이 경쟁에서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소위 좌익적 성향을 지닌 단체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정은 처음에는 일본경찰에 치안을 맡기더니 일본 경찰 철수 이후에는 친일 경찰에게 치안을 담당하게 한다. 미군정은 이러한 물리력을 바탕으로 애국세력을 배척하고 또 그들을 좌익성향으로 규정하여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친일세력 중심으로 권력을 편성해 나간다.

만약 미군정이 ‘군사물리력’ 이 아니라 ‘정치력’ 으로 자주적 흐름을 회유하고 제도 내로 편입하고자 시도하였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실제 대구에서나 농촌에서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지도자, 애국자, 청년, 농민조직, 노동조직, 좌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친일파를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 세력이 연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중앙좌익에 일방적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인민위원회의 중앙 지도자인 여운형, 조만식 역시 좌익운동가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박헌영과는 정적 관계였다. 만약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정치적 파트너로 삼고 이들 중 좌익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면서 대다수의 지역지도자, 애국자, 청년, 농민, 노동자들을 제도 내로 편입시키고자 시도하였다면, 이를 보장하는 민주적 선거와 통치를 시도하였다면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겨우 30대 나이에, 전쟁조직의 경험밖에 없는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쟁에서 형성된 적-아 개념으로 통치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의 명언인 ‘정치는 생물’ 이라는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김구 선생이 가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조차 용납할 수 없어 개인 자격으로 귀국시켰을 정도였으니...

<보통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1946년 10월항쟁이 터진 시점에 20대의 양심적인 청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아직 이데올로기 대립은 없었다. 빨갱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경찰이 독립군 잡기 위해 쓰던 말일 뿐, 그 말을 사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시대였다. 당연히 미군정 하에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도 없었다.(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이승만정부에 의해 만들어진다. 10월항쟁은 미군정 포고령에 저촉된 것이다) 조선공산당을 포함한 좌익활동도

합법적이었으며 큰길에 사무실을 둔 공식 조직이었다. 해방 직후 우익단체가 ‘새나라 지도자감’으로 적당한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그 순서가 다음과 같다.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 이관술, 김일성, 김규식, 안재홍, 허헌, 최용달 순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좌우익을 구분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친일파 즉 친일로부를 축적한 자, 친일경찰 및 관료를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새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소망이었다. 국민들은 미군을 절대 환영하였다. 그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주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물론 소련에 대해서도 절대 환영과 감사를 표했다. 좌우단체 가릴 것 없이 그들 조직의 명예고문은 루즈벨트와 스탈린이었다. 신의주에서 말썽을 일으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소련보다는 미국이 더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나라 미국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정학적 해석도 이러한 판단에 가세했다.

1946년에 20대 청년은 ‘냉전시대’가 무엇인지 몰랐다.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으로써 ‘같은 편’이었다. 미군정과 친일파가 주도하여 세운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 경제와 민주주의 양면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10월항쟁에 함께 참여했던 선후배들이 산에서 활동했고 의리상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지지했으며 그 때문에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으로 끌려가 민간인인 자신이 학살당할 줄은 정말 몰랐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자신이 죽자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 자식이 연좌제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당하였다는 사실은 죽어서도 몰랐을 것이다!

1946년 20대 청년은 오로지 일제와 친일파에 대한 분노와 함께 다시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주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새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싶었을 것이다. 미국과 소련을 구분하지 않았고 좌익과 우익인사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 모두를 존경할 따름이었다.

청년의 눈에는 악독한 친일파가 통역과 행정과정에 참여해 미군정을 꼬드겨 정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나서서 친일파를 반대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미군정에 보여주어 자주국가 건설이 미군의 지원 속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10월 항쟁의 시위대가 미군을 공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20, 30대 미국 군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의’ ‘여론수렴’ ‘민주주의’ 이런 단어는 본국 시민들만의 전유물일 뿐, 한반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강경파에 속하는 맥아더와 하지는 트루먼의 평화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소련과의 대결에만 열을 올렸다. 미군정은 민의를 짓밟았고 이제 대립은 소수화, 과격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5. 민족민주과제의 미해결과 항쟁의 연속

미군정은 전술군과 친일경찰을 동원해서 물리적 진압에 급급하였을 뿐, 봉기의 원인에 대한 치유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식민지 지배에 관심이 있었다. 47년에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키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나아간다. 이는 민족구성원들이 열망하는 통일자주국가 수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48년 4월 3일 제주도민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 결기한다. 제주 4.3항쟁은 그 주도세력이 누구이든지에 관계없이 도민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8.15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대탄압을 감행한다. 무려 도민의 1/3을 도륙했다고 한다.

제주 진압을 명령받자 여수주둔 국방경비대는 봉기를 일으키고 여수로 진입하자 전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했으며 항쟁은 전남 전역으로 확산된다. 이미 수립된 대한민국에 대해 분단국가임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탄압을 가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나 여수순천에서나 그 근본 원인인 민족민주의 과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미 지배세력들이 민족민주 과제와 반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해결되지 못한 민족민주 과제는 이승만의 무단적 탄압 아래에서 더욱 악화한다. 피해대중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조봉암은 빨갱이로 조작되어 사법살인을 당한다. 민중에 토대한 경제건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미국의 원조농산물에 기생하여 농민에 피해를 주면서 그 이익을 재벌 육성에 사용한다. 이러한 반민중독재정권은 마침내 4.19혁명으로 붕괴된다.

4.19는 그야말로 전반기 민주혁명과 후반기의 민족혁명으로 전개되어 민족민주 과제 실현을 위한 운동이 전면화하였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고 민족단합에 의한 내재적 경제건설을 희망했던 민중과 민족민주세력은 자주·자립경제·민주·통일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민족민주의 요구는 동아시아를 미국의 신식민지경제권에 묶어두고자 하는 의도와 배치된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을 세운다. 마침내 5.16군사쿠데타가 발발한다.

박정희의 독재는 유신독재에 이르러 총통제로까지 극대화하고 경제는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 재벌과 관료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일협정반대, 3선개헌반대, 유신독재반대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발발하고 마침내 광주 5.18항쟁으로 비화한다. 드디어 87년 6월항쟁으로 전면적 개혁의 길에 들어서는 듯했지만, 노태우의 6.29항복선언은 불철저한 개혁, 예방혁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공간에서 안정적인 정권교체의 길이 열리기도 했으나 이미 내외의 자본이 군사독재를 대신해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장악하고 난 후였다. 이제 자본이 지배자로 등장하면서 다시 민족민주 과제는 후퇴하고 말았다. 아직도 10월 항쟁, 4.3항쟁, 여순항쟁이 추구했던 민족민주 과제는 미해결로 남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6. 과거사 해결의 세 가지 원칙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분단된 현실에서 근본적 과거사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해결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원칙이 있을 것이다.

첫째, 민족민주 과제 해결의 원칙이다. 10월항쟁, 제주 4.3항쟁, 여순항쟁을 민초들의 민족민주적 요구가 폭발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 사건들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민족민주 과제를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에서 그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유족 개별보상과 같은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광주나 제주처럼 사건에 대한 집단보상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추모관을 세우고 그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바람직한 교육관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반

성을 위한 제반 제도적 법적 교육·문화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항쟁에 대한 통합적 사고의 원칙이다. 10월 항쟁, 제주 4.3, 여순 항쟁은 ‘일련의’ 사건들이다. 해방된 나라의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민족민주과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10월 항쟁의 가장 큰 과제가었던 자주적 국가 수립이 좌절하자 단정수립 국면에 가서는 제주 4.3항쟁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대해 폭압적 탄압이 자행되자 이를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순민중항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 사건들의 의미는 분리되지 않으며 시간적으로도 연속적이다. 이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조사활동의 원칙이다. 10월항쟁의 경우는 거의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항쟁이 전국에 걸쳐 있었으나 현재는 겨우 대구 인근지역에서 지극히 일부인 78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을 뿐이다. 당시 정보기구의 공식 기록에서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집단보상의 원칙이다. 유족 중심의 활동과 보상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우선은 범시민사회단체, 점차 범자치단체 그리고 범시민 차원에서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도 이들을 추모의 주체로 해야 한다. 무단적인 탄압은 개별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가장 크게 피해를 입혔지만 그 못지않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정의를 행하는데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역사를 공공연히 왜곡하여 민족민주 과제를 실종시키는 현실이 사실상 ‘가장 큰 피해’ 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를 바로 잡기위한 집단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바른 역사교육이 가능한 추모시설, 교육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7. 준비 조직

먼저 10월 항쟁과 그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10월항쟁 피해 진상규명과 실태조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연결해서 신속히 ‘전국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국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구성에서 점차 실질적인 구성으로 나아가 갈 필요가 있다. 즉 전국에서 가능한 지역과 역사문제에 명망성을 지닌 분들을 중심으로 전국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각 지역의 개별적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를 연결하여 ‘항쟁의 역사적 연속성’과 ‘지역통합적 의미’를 부가시켜서 보다 효과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여수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님의 제안인 ‘정부수립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 제정과 이를 위한 전국적인 연구자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에 공감한다.

8. 나가며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비유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실제 우리사회는 그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 그 발언자를 징치하는 것으로서는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10월항쟁 이래, 민족민주과제가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결과이며 그러한 현실이 그의 말에 투영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항쟁이 70주년을 맞았다. 내년은 87년 6월항쟁 30주년이다. 2년 뒤, 2018년은 제주 4.3과 여순 항쟁이 70주년을 맞는다. 정권의 비민주성이 극에 달한 현재 국민들은 변화를 바란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민족민주 과제의 완전한 실현이다. 10월 항쟁, 제주 4.3, 여순 항쟁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민족민주과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며 국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이루는 것이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이 영 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
 - 1. 배경
 - 2. 전남동부지역
 - 3. 전남서부지역, 전북지역
 - 4. 경남지역
 - 5. 피해
- III.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 1. 진상규명의 실제
 - 2. 진상규명의 한계와 과제
- IV. 맺음 말

I. 들어가는 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의내린 ‘여순사건’은 1948. 10. 19.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 9. 28.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여 동안 전라남도과 전라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48. 10. 19.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파병 반대’를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뒤 사건이 여수를 거쳐 순천 등의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해 경찰, 우익인사 등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10. 21일부터 27일 여수가 탈환될 때까지 진압군이 ‘반군토벌사령부’를 설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었다. 그 뒤 반군 점령 지역 수복 이후 반군 ‘협력자 색출’ 과정에서 진압군과 경찰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집단희생을 당하고, 반군과 지방좌익이 진압군에 밀려 지리산 등지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고 토벌대가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지리산 등지의 산간 지역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었다. 또 여순사건 발발 후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해산되고 반군에서 이탈한 다수의 군인들이 은거 또는 귀향 도중 반군으로 오인되어 경찰·진압군에 의해 희생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한편으로 여순사건 관련으로 전향자 관변 조직인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들과 진압, 토벌 작전 중에 검거되어 대전형무소 등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되었다.

II.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

1. 배경

1948년 8월 15일 38선을 경계로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주·보수적 언론인 등을 주축으로 한 이승만 정권의 지지 기반은 취약했다. 또 국방경비대 내에는 남로당원과 그 동조세력이 존재하였고 제주43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며, 각 지역마다 좌익이 잠재하고 있었다.

1948. 5월 초, 단정단선반대투쟁이 절정을 이루고 춘궁기까지 겹쳤던 이 시기에 광주의 국방경비대 제4연대 제1대대를 기간 병력으로 제14연대가 여수에 창설되었다. 그리고 1948. 10. 19. 새벽, 전라남도 여수 신월리 제14연대 병영에서 제주도 파병에 반대하는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정부는 10. 20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진압작전을 단행하였다. 반군토벌사령부는 10. 22. 순천을 탈환한 뒤 10. 27. 최종적으로 여수를 탈환하면서 여순사

건을 일단 진압하였다. 그 뒤 진압군은 주민들을 집결시켜 반군과 협조자를 색출하였다. 반군의 즉결처분이나 인민재판에 앞장섰다고 적발된 이들은 즉석에서 살해당하였고, 나머지는 따로 수용되어 재심사나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등 반군의 점령지와 이동경로에 속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부역자’, ‘반군 협조자’ 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인과 경찰에게 희생당하였다. 또한 제14연대 반군의 주력부대와 지방좌익들은 정부의 진압작전이 본격화되자 백운산·조계산·지리산 등 주변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인근 지역의 지서, 관공서를 습격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식량과 물자를 약탈하는 등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압군의 작전은 남원, 구례, 백운산, 지리산 지역의 반군을 소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순사건 발발 후 제14연대 반군의 점령, 군경의 반군 점령지 탈환작전, 진압군경의 반군 협력자와 좌익 혐의자 색출 과정, 입산한 반군과 좌익에 대한 토벌작전 등을 거치면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대구10월사건, 제6연대사건 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빨치산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토벌 작전에 나선 군경은 빨치산과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빨치산과 협력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마을 주민들을 불법 사살하였다. 군경 토벌 작전은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이어졌다.

사건의 원인과 발생 배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순사건은 전남 동부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등과 연관된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신청사건이 아닌 직권조사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사건조사의 효율성과 인과관계 등 조사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국민보도연맹사건,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등은 본 사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여순사건은 주로 1948. 10. 19. 여순사건 발발 후 군경의 반군 점령지 탈환 과정의 진압작전과 그 뒤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전개된 빨치산 토벌작전을 다루고 있다.

2. 전남동부지역

여순사건의 발발지인 여수 뿐 아니라 전라남도 동부지역에 속하는 순천·구례·광양·보성·고흥·곡성은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여순사건 발발 직후 순천지역은 북상하려는 반군과 이를 봉쇄하려는 진압군이 충돌한 요충지였다. 진압군은 1948. 10월 말 순천 진압 직후 순천북국민학교·순천농림중학교·순천시 죽도봉 골짜기 등지에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순천 주민들을 집단 사살하였다. 그 뒤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국군 제15연대 등 병력이 순천에 주둔하면서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고, 토벌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조했다거나 좌익 가족이란 이유로 순천 일대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살하였다. 특히 순천시 서면은 광양 백운산·구례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빨치산 근거지였기 때문에 1949. 3월~12월 서면 구랑실재·서면 판교리 노은마을·용계산 골짜기 등지에서 서면 주민들이 토벌 군경에게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계속되었다.¹⁾

1948. 10월 말~1949. 8월 진행된 진압작전과 반군 협력자 색출 과정에서 여수시 도심권, 남면, 화양면 등지에서 민간인들이 진압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 국군 제5연대와 경찰토벌대는 진압 초기 여수 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만성리, 덕충동, 오림동, 문수동 등지에서 반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하였다. 여수시 남면에서는 1948. 10월 말~11월 김종원이 지휘하는 국군 제5연대 소속 군인들이 안도국민학교, 안도 선착장 등지에서 남면 주민들을 집단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

1948. 10월 하순~1949. 7월 지리산과 인접한 구례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었다. 특히 1948. 11월 구례 산동면에서 국군 제12연대 백인기 연대장이 빨치산의 기습으로 사망한 사건과 1948. 11. 19일 빨치산이 대규모로 구례읍을 공격한 사건이 발발한 직후에 전개된 토벌과정에서 민간인이 군경에게 희생되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국군 제3연대는 1948. 11월~1949. 7월 산동면 원촌초등학교와 누에고치 창고에서 산동면 주민들을 조

1)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2) 진실화해위원회, 『여수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사한 뒤 시상리 꽃쟁이재·이평리 윤씨 선산 인근에서 집단 사살하였다. 또 국군 제12연대 등 군경은 1948. 11월 말 간전면 간전국민학교 인근 간문천변, 구례읍 봉성산·섬진강 양정지구·서시천변 등지에서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간전면 주민들을 집단 사살하였다.³⁾

1948. 10월 말~1950. 3월 군경은 보성·고흥 일대에서 빨치산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본서나 읍면별 지서로 연행해 고문·조사한 뒤 보성을 원봉리 청용마을 골짜기, 벌교읍 소화다리, 고흥읍 남계리 공동묘지 등지에서 집단 사살했다.⁴⁾

백운산에 인접한 광양지역에서는 여순사건 발발 이후 반군과 지방좌익 세력이 백운산을 거점으로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면서 한국전쟁 시기까지 사실상 전쟁상태가 지속되었다. 특히 1949. 9. 16일 백운산 빨치산이 대규모로 광양읍을 습격한 사건 직후 광양지역에서는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민간인들이 군경에게 희생되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군 제 15연대와 광양경찰서 경찰은 광양읍 습격 사건 직후인 1949. 9월 경 광양읍 우산리 쇠머리재, 광양읍 반송재, 구랑실재 등지와 진상면 어치리 느재마을, 옥룡면 가모개재 등지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나 입산자 가족이란 이유로 광양 일대 주민들을 집단 사살했다.⁵⁾

1948. 10. 23. 제3연대가 곡성을 탈환하고 1948. 11월~12월 제15연대 소속 부대가 곡성에 주둔했다. 제15연대 소속 부대는 곡성경찰서 토벌대와 함께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곡성군 석곡면 주민 10여 명을 집단 사살했다. 죽곡면 원달리에서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빨치산이 곡성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인들이 원달리 구 마을회관 앞 개울가에 주민들을 소집하고 청장년들을 끌어내 대검으로 살해했다.⁶⁾

3. 전남 서부지역, 전북지역

3)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4) 진실화해위원회,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5) 진실화해위원회,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6)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전라남도 동부지역 뿐 아니라 화순·나주·영암 등 서남부지역과 전라북도 임실·김제 등지에서도 여순사건 발발 이후 토벌작전과 좌익 색출 과정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순사건 발발 이후 빨치산이 화순군 북면 백아산·남면과 동북면에 걸친 모후산·청풍면과 도암면에 걸친 화학산, 나주 다도면 등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1949. 10월 경 군경이 화순군 북면 아산국민학교 등지에서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민간인들을 사살했다. 또 화순경찰서와 나주경찰서 경찰은 빨치산 협력자를 색출하면서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풍무재, 나주군 다도면 암정리 등지에서 민간인들을 사살하였다.⁷⁾

함평군 불갑산과 군유산 인근에서도 여순사건 발발 후 빨치산이 활동하여 군경이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주로 산간 마을인 함평면·손불면·신광면에서 희생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1948. 10. 22. ~ 1950. 4월 함평 일대에서 전남경찰국 기동대, 함평 영광경찰서 기동대와 지서경찰, 국군에게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마을 주민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갑산 인근에서 토벌작전을 하던 진압군은 신광면 주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묘지 인근에서 집단 사살하였고,⁸⁾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토벌대는 오인사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 주민 30여 명을 집단 사살하였다.⁹⁾

담양에서는 대덕면 야학교사 등 20여 명이 좌익 활동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대덕면 문학리 옥천마을 앞산 중례골에서 집단 사살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¹⁰⁾ 산으로 둘러싸여 빨치산이 자주 출몰하던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산간 마을 주민 일가족은 빨치산에게 밥을 줬다는 혐의로 장성경찰서 경찰에게 집단 사살되었다.¹¹⁾

7) 진실화해위원회, 『화순·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8) 진실화해위원회,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9) 진실화해위원회, 『함평양림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7)

10)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11)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1946. 11월 발생한 대규모 추수봉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49년 해남지역 주민들이 좌익 혐의로 옥천면 대산리 마을 대밭, 우슬재 등지에서 군경에게 사살되었다. 1949. 2. 13일 빨치산이 해남경찰서를 습격하자 경찰토벌대가 해남 일대를 토벌하면서 현산면 주민들을 화산면 해창리 나뭇재에서 사살했다. 이후 1949. 9월 ~ 1950. 5월 경찰은 현산면 배암골 골짜기, 송지면 마봉리 달마산 등지에서 주민들을 좌익 혐의로 집단 사살하였다.¹²⁾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이 활동하던 영광의 불갑산, 태청산, 구수산 등 산자락에 위치한 군남면·대마면·묘량면 등지에서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불갑산, 군유산, 월암산으로 둘러싸여 빨치산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던 군남면 옥실리 마을 주민들은 좌익 활동 혐의로 내묘와 설도 사이 독에서 경찰에게 집단 사살되었다. 또 법성면 진내리의 항일 독립운동가와 주민 30여 명이 좌익 활동 혐의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부족재에서 집단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³⁾

장흥에서는 제암산 근처의 장흥읍 금산리 주민들이 1949. 10월 경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마을 앞 논에서 경찰에 사살되는 사건과 관산을 농안리 손씨 일가가 좌익가족이란 이유로 경찰에게 집단 사살되거나 고문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¹⁴⁾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주민은 용호리 용산골짜기에서 좌익 혐의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¹⁵⁾

무안반도 서북단에 위치해 바다로 둘러싸인 평야지대인 무안군 운남면에서도 민간인 희생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무안경찰서 경찰은 여순사건 이후 좌익을 토벌하던 중 운남면 일대에서 주민들을 좌익 혐의로 집단 사살했다. 또 경찰이 좌익 명부를 발견한 뒤 해제면 만풍리 주민들을 좌익 협조 혐의로 운남면 내리 저동마을 야산에서 집단 사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¹⁶⁾

1947년 3.1절 기념 주암 집회 이후 입산한 좌익과 여순사건 뒤 영암으로 들

12) 진실화해위원회, 『해남군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전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3) 진실화해위원회,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14)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5)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6) 진실화해위원회,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어은 반군이 영암군 군서면 월출산을 근거지로 삼아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군경이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 협력 혐의로 살해했다. 1949. 3월~8월 월출산과 인접한 군서면 주민들이 빨치산 협조 혐의로 군서지사로 연행되어 서구림리 모정마을 뒷산, 군서지서 인근 등지에서 경찰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⁷⁾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온 좌익을 숨겨주었다는 혐의로 서북청년단에게 맞아서 사망했고, 하의면 상태서리 주민은 사촌동생이 14연대 반군이란 이유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¹⁸⁾ 1949. 2월~10월 빨치산 이동 경로로 이용되던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면·본량면·효지면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또는 좌익 혐의를 받아 경찰에게 사살되었다.¹⁹⁾ 또 순천 철도국에서 근무하던 철도원이 여순사건 발발 후 피신한 목포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2·7 사건’ 영향으로 좌익 세력이 임실군 성수면 지서를 습격한 사건과 여순사건이 발생한 뒤 임실 경찰은 관내 좌익 세력 색출을 강화했다. 1948. 12월 말 청응면에서 빨치산 아지트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석두리·남산리 주민 20여 명을 좌익 혐의로 연행한 뒤 임실경찰서 인근에서 집단 사살했다.²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주민들은 좌익 활동 혐의를 받아 전남경찰국으로 연행된 뒤 희생당하였다.²¹⁾

4. 경남지역

경상남도 일대에서도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으로 들어간 14연대 반군과 입산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호남방면전투사령부·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와 경찰의 토벌작전과 좌익 혐의자 조사와 검거 업무가 이루어졌고, 빨치산의 인적·물적 보

17) 진실화해위원회,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2) 진실규명결정서』 (2010),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18)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신안·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19) 진실화해위원회,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1)』 (2008), 『신안·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20) 진실화해위원회,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21) 진실화해위원회,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급로를 차단하고, 빨치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산간 마을을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도 잇달아 발생하였다.

함양군은 북쪽으로 남덕유산, 남쪽으로 지리산을 경계로 깃대봉, 월봉산, 황석산 등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이 깊은 산 주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빨치산이 자주 출몰해 보급처로 활용한 반면 군경은 치안을 확보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제14연대 반군이 1948년 말 함양군 관공서를 공격하는 등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자 지리산 지구를 토벌 중이던 국군과 함양경찰서 경찰 토벌대는 1949. 5월 ~ 1950. 3월 함양군 일대와 지리산·황석산·백운산·덕유산 등 산악지대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의면·지곡면·수동면·서하면·백전면·휴천면 등 산간마을 주민들이 빨치산 협조 혐의로 군부대, 함양경찰서, 각 지서 등으로 연행되어 고문을 받고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안의면 공동묘지 등지에서 살해되었다. 특히 수동면 도북리 주민 30여 명은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명부가 나왔다는 이유로 함양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받은 뒤 당그래산에서 군인들에게 집단 사살되었다.²²⁾ 또 덕유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오지마을로 여순사건 발발 이후 빨치산들이 덕유산과 지리산을 오가며 식량을 가져가곤 했던 안의면 춘전리 주민 20여 명은 빨치산의 심부름을 했다는 혐의로 대밭골 등지에서 경찰에게 집단 사살되었다.²³⁾

산간 지역인 산청군 시천면·삼장면·단성면, 하동군 옥종면 일대에서도 군경이 토벌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1949. 7월 ~ 1950. 1월 지리산 토벌 중이던 제3연대 군인들은 산청군 주민 수백여 명을 산청군 시천면 신천국민학교·덕산국민학교 뒷산·농회창고 뒷산, 삼장면 가목골 등지에서 집단 학살하였다. 1949. 7월 ~ 12월 제3연대 군인들은 산청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구 덕산지서로 연행한 뒤 시천면 사리 소재 농회창고에 구금하였다가 구 덕산지서 뒷산으로 끌고 가 집단 사살·척살하였다.²⁴⁾ 그 뒤 1950. 1월 말 제3연대 제2대대 소속 군인들이 서울로 이동할 때까지 이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게

22) 진실화해위원회,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23) 진실화해위원회, 『서부 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24)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산청·함양·사천·고성·거창·거제 민간인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10)

희생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다.²⁵⁾

군경은 거창군에서 빨치산의 인적·물적 보급로를 차단하고, 빨치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산간 마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빨치산과 내통하거나 빨치산에게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주민들을 군부대와 각 경찰서·지서 등으로 연행하여 고문·조사한 뒤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 거창군 거창읍 주민 30여 명은 거창경찰서로 끌려간 뒤 북상면사무소 갈계리 뒷산에서 경찰들에게 집단 사살되었고, 하동군 적량면 동리 주민은 빨치산 협조 혐의로 하동경찰서로 연행된 뒤 당시 토벌군이 주둔하던 화개면 담배창고에 구금된 채 집단 희생당했다.²⁶⁾ 사천군 용현면 송지리 주민은 좌익 활동하던 친구들이 집에서 자고 갔다는 이유로 지서로 끌려가 경찰에게 사살당하기도 하였다.²⁷⁾

산지가 많은 합천에서도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였고, 산간마을에 무장한 빨치산들이 출현하여 식량 제공 등 협조를 요구하였다. 1949. 8월~9월 경찰과 지리산 공비토벌 특수경찰은 합천읍 내곡리와 인곡리 주민들을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양면 소재 희미 뒷산과 묘산면 장터에서 집단 사살하였다.²⁸⁾ 또 삼가면 하판리 상판마을 주민이 경찰에게 사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²⁹⁾

5. 피해

1948년 정부수립 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국가기관이 조사한 희생 규모는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이 진압된 직후 전라남도 보건후생당국이 조사한 피해상황 통계에 따르면, 1948. 11. 1. 기준으로 인명 피해는 여수 2,450명(사망 1,300명, 중상 800명, 경상 350명), 순천 2,055명(사망 1,134명, 중상 103명, 행방불명 818명), 보성 148명(사망 80명, 중상 31명, 경상 30명, 행방불명 7명), 고흥 76명(사망 26명, 중상 42명, 경상 8명), 광양 사망 57명, 구례 180명(사망 30명, 중

25)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산청군·시천면·삼장면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7), 『경남 산청·함양·사천·고성·거창·거제 민간인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10)

26) 진실화해위원회, 『서부 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10)

27)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산청·함양·사천·고성·거창·거제 민간인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10)

28)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8)

29)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합천 등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10)

상 50명, 경상 100명), 곡성 8명(사망 6명, 중상 2명) 등이다.³⁰⁾

한편 1948. 11. 20. 정부 조사 결과 인명 피해는 여수·순천지역 총 1,979명(사망 1,636명, 중상 107명, 경상 236명), 구례·광양·보성·고흥지역에서는 총 1,281명(사망 570명, 중상 7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³¹⁾

1949. 1. 10. 정부가 여수·순천·구례·곡성·광양·고흥·보성·화순 등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인명 피해는 사망 3,392명, 중상 2,056명, 행방불명 82명 등 총 5,530명이다.³²⁾ 1949. 11. 11. 전라남도 당국이 여순사건 발생지역 전체를 조사한 결과 인명 피해는 1만 1,13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³³⁾

이후 또 다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여순사건으로 신청 접수되어 조사개시 결정된 사건 689건은 실제에 있어 군경토벌에 의한 희생사건이다. 이외에도 여순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해당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 등 360여건이 있으나, 직권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6월 29일에 최종적으로 여순사건·군경토벌사건 신청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구례 186명('08. 7. 8일 결정), 순천 258명('09. 1. 5일 결정), 고흥 43명('09. 11. 10일 결정), 보성 49명('09. 11. 10일 결정), 광양 64명('10. 5. 11일 결정), 기타 지역 141명('10. 5. 18일 결정), 여수 126건('10. 6. 29일 결정)으로 총 867명의 여순사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그것이다. 그 피해 인원과 추정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 군경토벌사건 추정 대비 희생자 피해 현황

단위 : 명, %

	추 정	신 청		확 인		비 고
여 수	1,300명	111명	8.5%	126명	9.7%	
순 천	2,060명	205명	9.9%	258명	12.5%	
광 양	563명	43명	7.6%	64명	11.4%	

30) 『호남신문』, 1948. 11. 5.

31) 『국회속기록』 제2회 제13호(1949. 1. 25.), 243~245쪽.

32) 『동아일보』, 1949. 1. 22.

33) 『호남신문』, 1949. 11. 1.

구 레	1,318명	154명	11.7%	186명	14.1%	
고 흥	150명	41명	27.3%	43명	28.7%	
보 성	200명	44명	22.0%	49명	24.5%	
기타 지역		91명		141명		
계	1)5,591명	689명 (대표신청포함)	12.3%	867명	15.5%	설명 추정1)
	2)11,131명		6.18%		7.8%	설명 추정2)

※ 1. 추정 1) 5,591명은 1948년 11월 1일 현재, 전라남도 보건후생국 통계 자료와 2008년, 2009년도 위원회 연구 용역 피해자 현황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참조한 최소 기준임

2. 추정 2) 11,131명은 사건발발 1년 후 전남도가 1949. 11. 11일에 조사한 인명피해 자료임

3. 기타 지역 : 화순, 나주, 곡성, 담양, 목포, 신안, 영암, 장성, 장흥 지역 등

4. 위의 '추정 대비 희생자 피해 현황'은 여순사건 관련 해당지역의 국민보도연맹, 형무소재소자, 부역혐의사건 피해자 360여명은 누락된 자료임

여수·순천사건 피해 현황 비교

조사기관	진실화해위원회	전라남도(A)	정 부(B)	정 부(C)	전라남도(D)
조사기준일	2010. 6.30	1948.11. 1	1948.11.20	1949. 1.10	1949.11.11
피해인원(차이)	867(-)	4,974(4,107)	3,260(2,393)	5,530(4,663)	11,131(10,264)

A : 전남도(보건후생당국) 발표, 호남신문(1948. 11. 5)

B : 정부(사회부)가 조사한 '반란군이 자행한' 피해규모, 국회속기록 제2회제13호(1949. 1.25) 243-245쪽

C : 중앙청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현지조사 후 보고한 피해상황, 동아일보(1949. 1. 22)

D : 전남도가 조사한 여순사건 이후의 도민 피해, 호남신문(1949. 11. 11)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재구성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33개 시·군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순사건 관련으로 군경과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고 확인되거나 추정된 민간인은 총 2,269명이다. 이중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2,060명이고, 희생자로 추정된 사람은 153명이며, 불능자는 56명이다. 각 도별로 희생자 수를 살

펴보면, 여순사건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전라남도 지역의 희생자 수가 총 1,634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72% 이상을 차지한다. 여순사건 발발 이후 전개된 군경의 지리산 토벌작전의 영향을 받은 함양·산청 등 경상남도 지역의 희생자는 459명, 그 외 전라북도 지역의 희생자는 26명으로 집계되었다. 아래의 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소가 확인 또는 추정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피학살자 현황이다.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등 피학살자 현황

조사결과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14연대	미상	계
확인(명)	1,513	4	442	31	70	2,060
추정(명)	68	20	16	2	47	153
불능(명)	53	2	1			56
계(명)	1,634	26	459	33	117	2,269

지역별 유형별 피학살자 현황

구분	군경토벌				보도연맹				형무소사건				군경사건				적대사건				계			
	확인	불능	추정	계	확인	불능	추정	계	확인	불능	추정	계	확인	불능	추정	계	확인	불능	추정	계	확인	불능	추정	계
전남	879	14	29	922	220	2		222	137	31	31	199	157	6		163	120		8	128	1513	53	68	1634
전북					1			1			2	2	5		18	23					4	2	20	26
경남					88		3	91	3		2	5	327	1	11	339	24			24	442	1	16	459
14R									31		2	33									31		2	33
미상									70		47	117									70		47	117
계	879	14	29	922	309	2	3	314	241	31	84	356	489	7	29	525	144		8	152	2060	56	153	2269

※ 설명 : 확인 - 진실규명 / 불능 - 불능·각하 / 추정 - 추정·미정

Ⅲ.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1. 진상규명의 실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으로 신청 접수되어 조사개시 결정된 사건은 실제에 있어 군경토벌에 의한 희생사건에 국한하고 있다. 여순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해당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6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여순사건·군경토벌사건 희생자 867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구례 186명('08. 7. 8일 결정), 순천 258명('09. 1. 5일 결정), 고흥 43명('09. 11. 10일 결정), 보성 49명('09. 11. 10일 결정), 광양 64명('10. 5. 11일 결정), 기타 지역 141명('10. 5. 18일 결정), 여수 126건('10. 6. 29일 결정)으로 총 867명의 여순사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제한된 기간에 전국이 아닌 극히 일부 지역만을 조사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 또는 추정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의 희생자 수는 실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이 수치 중 전라남도의 희생자 수를 앞에서 살펴본 여순사건 발발 직후인 1948. 11. 1. 전라남도 보건후생당국이 조사한 여수·순천·보성·고흥·광양·구례·곡성 지역의 피해상황 통계, 1949. 1. 10. 정부가 실시한 여수·순천·구례·곡성·광양·고흥·보성·화순 등지의 인명 피해 조사 결과, 1949. 11. 11. 전라남도 당국이 실시한 여순사건 발생지역 전체의 인명 피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그 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를 살펴보면 여순사건 발발 후 빨치산 토벌작전이 전개된 지리산 자락의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대, 함양 등 경상남도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 주체는 반군토벌사령부 ~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예하 각 부대, 전남경찰국과 산하 각 지역경찰, 우익청년단이었다. 경상남도·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예하 각 부대, 호림부대, 그리고 경남경찰국·경북경찰국과 산하 각 지역경찰, 우익청년단이었다.

군경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민간인들을 살해한 현지 군경과 지휘관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군경의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를 고려할 때 하급 기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2. 진상규명의 한계와 과제

여순사건 조사결과의 한계로는 먼저 직권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전반적인 희생규모와 희생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여순사건’ 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사건의 규모와 체계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과 조사 인력 부족,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사건 조사는 직권조사 결정 당시의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청사건 위주로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역시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희생사실 확인이 주를 이루었다.

군인·경찰과 제14연대 반군·좌익·빨치산 등 가해주체에 따라 사건을 분류하여 조사하거나 형식적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사건을 분류하여 조사한 방식도 조사결과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즉 군인·경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반군·좌익·빨치산에 의한 적대세력사건을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시기 순으로 이어지는 희생사건을 통사적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을 함으로써 한 지역의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끌어냈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조사결과의 한계로는 ‘상해사건’, ‘제14연대 군인사건’ 등에 대한 각하 의결을 들 수 있다. 군경에 의해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상해사건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각하’ 처리되었는데, 이로 인해 2006년에 사건을 신청하고 4년 동안 진실규명 결과를 기다린 신청인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국방경비대 제14연대·4연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여순사건 발발 후 행방불명되거나, 군대에서 이탈하여 귀향 도중 진압군에게 검거되어 희생당하거나, 고향으로 돌아와 자택에서 은거하던 중 진압군·경찰, 또는 반군·지방좌익에게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14연대 군인 가족 역시 피해를 면하지 못했다. 군인과 경찰들은 진압 과정과 토벌 과정에서 가족의 집을 방화하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하였다. 진압 과정과 토벌 과정에서 살아남은 제14연대 군인과 그 가족들은 그 뒤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한국전쟁 발발 후 집단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여순사건 발발 당시 제14연대 군인의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14연대 군인사건을 각하하여 ‘여순사건’을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할 당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였다.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이라는 사건명으로 신청자 689명 외에 178명을 추가하여 863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국가의 사과,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위 권고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된 바가 없다는 게 여순사건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의 과제로는 개별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34) 권고사항 :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① 국가의 사과 : 국가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 토벌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과 경찰이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 및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위령사업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사망일사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특히 희생자의 유복자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입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 국가는 본 사건의 민간인 희생 관련 내용을 정부의 공식 간행물, 역사교과서, 군경찰 발간 자체 간행물, 여수지역 향토사 등에 추가하거나 잘못 기술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평화인권교육 강화 : 국가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전국적인 연구자 조직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하여야 한다.

먼저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해방과 더불어 신탁통치와 단선단정이라는 격동의 정세와 시대를 거쳐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로 하는 한국사회는 신탁통치에 대한 찬탁과 반탁,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단선단정 찬성과 반대라는 정세와 맞물려 1946년 '대구10월항쟁', 1948년 '제주4·3'과 여순사건이라는 주요한 대중운동에 직면한 것이다.

여순사건은 전남동부지역을 비롯한 전북과 경남, 대구 등 거의 전국에서 주민 대다수가 경찰에 의해 불법적인 민간인집단학살이 저질러진 사건임에도 이념 공세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반세기가 훨씬 넘는 68년이 넘도록 전남동부지역만의 아픈 역사로만 축소 은폐된 채로 숨죽여 살아야만 했다. 실제에 있어 이러한 정부수립 전후의 3대 대중투쟁사건인 대구10월항쟁, 제주4·3, 여순사건은 항쟁요소가 강한 사건으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역사적 재평가가 따라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는 제주4·3만이 개별특별법이 제정되고 추진되어 진상조사보고서, 추모공원, 평화재단 등의 일정한 자기 완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여순사건은 대구10월항쟁과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국전쟁전후로 하는 민간인집단학살사건과 함께 극히 일부 지역만의 일부 피해자만이 조사 결과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피학살을 당한 1,222개 민간인피학살사건과는 달리 항쟁적 요소로서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민간인집단학살사건과 함께 묻힌 사건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민간인학살사건만 부각되어 항쟁적 성격이 짙은 역사적 사건은 묻혀 버리고만 것이다.

따라서 여순사건은 이제 제주4·3과 같은 개별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대구10월항쟁과 같이 '정부수립 전후 민간인희생사건'으로 통합하여 진상규명과 실태조사 및 역사적 재평가 작업을 위한 기칭 '정부수립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순사건은 전남동부지역뿐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상황이었으나 지난 진

실화해위원회에서는 소수의 조사관이 배치되어 조사를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가칭 ‘민간인학살통합특별법’으로는 조사기구의 여건상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관계로 또 다시 조사인력과 조사기간 모두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세는 여소야대라는 20대 국회 정세와 19대 대통령 선거 정세를 최대한 활용할 뿐 아니라, 대구지역의 개혁적인 인사들과도 심도있는 논의를 실증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IV. 맺음말

2010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³⁵⁾은 제주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집단희생사건으로서 당시 이승만정부 하에 계엄령 실시,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분단 체제 공고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³⁶⁾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신청 접수되어 조사개시 결정된 사건은 실제에 있어 군경토벌에 의한 희생사건에 국한하고 있다. 여순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해당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였다. 여순사건은 전남동부지역을 비롯한 전북과 경남, 대구 등 거의 전국에서 주민 대다수가 경찰에 의해 불법적인 민간인집단학살이 저질러진 사건임에도 이념 공세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반세기가 훨씬 넘는 68년이 넘도록 전남동부지역만의 아픈 역사로만 축소 은폐된 채로 숨죽여 살아야만 했다.

실제에 있어 이러한 정부수립 전후의 3대 대중투쟁사건인 대구10월항쟁, 제주4·3, 여순사건은 항쟁요소가 강한 사건으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역사적 재평가가 따라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는 제주4·3만이 개별특별법이 제

35) 종래에는 “여수순천반란사건”, “여순반란사건”으로도 불렸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라고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1995년부터 “여수순천사건” 또는 “여수순천10·19사건”을 사용함.

36)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77쪽(여순사건의 영향 참조).

정되고 추진되어 진상조사보고서, 추모공원, 평화재단 등의 일정한 자기 완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정부수립 전후의 3대 대중운동인 대구10월항쟁, 제주4·3, 여순사건은 항쟁요소가 강한 사건으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역사적 재평가가 따라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는 제주4·3만이 개별특별법이 제정되고 추진되어 진상조사보고서, 추모공원, 평화재단 등의 일정한 자기 완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순사건은 이제 제주4·3과 같은 개별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대구10월항쟁과 여순사건을 통괄하여 ‘정부수립 전후 민간인희생사건’으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 및 명예회복과 역사적 재평가 작업을 위한 가칭 ‘정부수립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며, 여순사건의 역사적 재평가를 위해 전국적인 연구자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후속조치로서 최소한 제주4·3과 같은 수준의 평화재단 및 추모위령공간과 함께 사료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의적인 축소와 은폐로 근거 없이 왜곡으로 확대되어 왔다. 당시 신문은 사실 확인 없는 보도를 양산했고 이후 관련 기록들은 한쪽의 일방적 시각 밑에서 서술되었다. 여순사건의 연구가 먼저 사실에 대한 규명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안종철 (윤상원기념사업회 부이사장)

I. 진상규명의 배경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상규명’이라는 의제는 책임자 처벌과 함께 1980년 5월 광주의 과제를 해결하는 선결조건으로 중요하게 작동하였고, ‘투쟁’의 원칙으로서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동력 노릇을 하였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체들은 ‘항쟁의 진상규명이 곧 한국의 민주화’와 직결되는 과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타의 후속사업을 진행·인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난 30여년 동안 5·18민주화운동에서 진상규명이 왜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해 왔을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투쟁의 과제였다면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 냈을까? 먼저 ‘진상규명’이라는 의제가 5·18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1980년 광주항쟁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지역민과 저항주체들은 항쟁 발생의 원인을 ‘잔악한 진압의 주체인 “전두환과 공수부대”’로 인식했다. 이에 반해 정부 및 계엄군은 항쟁의 원인을 “불순분자 및 고정간첩들”에 의한 “선동과 난동”으로 명명·규정했다. 다시 말해 1980년 광주항쟁의 발발을 두고 억압의 주체들과 저항의 주체들은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사실’들을 이야기 했다. 억압과 진압의 주체들은 이를 통해 진압의 명분을 구축하였고, 저항의 주체들은 저항의 정당성과 저항의 필연적 과제를 만들어갔다. 1980년 광주항쟁은 억압 측과 저항 측의 사실들이 충돌하는 ‘진실투쟁’이었으며, 이후 5월 운동은 저항 측의 사실이 확인·인정 그리고 확산되는 진실투쟁이었다.

지난 30여년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 왔는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구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난 30년간

많은 이들의 희생과 투쟁 속에서 진실 찾기를 위한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정권교체를 통해 인정받았으며, 주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몇 차례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투쟁은 곧 민주화 세력들의 ‘직접적 실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의 주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왔고 ‘성과’의 의의에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5·18의 진실과 그 성과는 학생운동 세력, 5·18관련자 모임 그리고 민주화운동 진영의 정치인들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때로는 같이, 때로는 다르게’ 이해되고 실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8의 진실은 분산적으로 논의 되었고, 산발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것이다.

II. 진상규명의 전개과정

5·18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진상규명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30년 동안의 ‘시간성’과 진상규명의 ‘주체성’, 그리고 진실의 ‘내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진실에 대한 담론투쟁’의 내용과 그 과정 전반을 의미하겠다. 시기적으로는 광주항쟁이 발발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이후의 ‘5월운동’ 전 기간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1980년 광주항쟁시기 민중은 계엄군의 잔악한 진압에 분노하고 그 실상을 알리고자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항쟁 이후 정부와 신문의 왜곡된 보도행태를 비판하고 항쟁의 진실을 알리고자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1. 1980년대 초 당사자들에 의한 진상규명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의 항쟁이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이후 전두환과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권정권은 동 사건을 “소요, (데모, 소요) 사태, 광주사태, 폭동” 등이라고 명명하였다. 당시 정권은 지역민의 저항을 복한의 고정 간첩과 김대중의 추종 세력들을 지칭하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이라고 폄하했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무력진압을 정당화하고, 동 사건의 진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설명하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었다.

또한 광주항쟁의 원인을 ‘지역감정’으로 규정함으로써 1980년 5월의 전국적 저항을 ‘지역’의 문제로 축소·유폐시키고, 집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방책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5·18 유가족 및 관련자 그리고 지역민들은 사건 발발 직후부터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사건의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1981년 항쟁 1주년 즈음하여 이들은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시민들의 항쟁이 군사정권의 집권으로 억압되었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민권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호소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5·18이 가지는 순수성을 강조하였다.

유가족 및 관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진실투쟁은 1983년 말 학원자율화와 더불어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종교계, 학계, 사회계 등 각종 관련단체들이 조직되면서 5·18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5·18은 ‘광주의거’,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5·18민중봉기’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 시작했다. 신군부 및 정부가 5·18의 사실들을 정치적으로 유폐시키고자 사용했던 “광주사태”라는 함의를 피하고, ‘5·18민중항쟁’을 민족, 민주, 민중, 자주, 통일 등의 논의들과 연계하려는 노력들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이 활성화될수록 ‘민중’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민중항쟁”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민중”은 5·18을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가 빚어낸 ‘사회변혁’적 힘의 폭발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 1980년 중반의 사회운동 진영에 의한 진상규명

1987년 ‘6월항쟁’은 5·18에 대한 전 시민적 관심과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국가는 5·18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7년 7월 2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광주사태 치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5·18에 대해 공식적인 재평가를 선언했다. 이에 7월 4일 유족회, 부상자회 등 31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항쟁을 이끌었던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

도 “80년 이후 현 정권의 전제와 폭압은 광주항쟁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미봉책으로도 호도될 수 없다” 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였다.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1987년 12월 29일 정부는 유족들에게 “광주 치유 특별법 제정과 광주사태는 민주화 추진 과정의 진통으로 평가해야 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편지를 발송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일련의 5·18 논의는 결과적으로 전국적·국가적 차원에서 논의의 시작하게 했지만, 이를 주관하는 노태우 정부의 역사적·태생적 한계에 따라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먼저 ‘광주문제’ 해결 절차를 비롯하여 ‘민주 발전과 국민 화합 및 사회개혁에 관한 실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 라 함)를 출범시켰다. 5·18은 ‘국민화합분과위원회’ 에서 담당했는데, 이 시기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계엄군의 과잉진압이 발단” 이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민화위의 진상조사는 사건이 8년이나 경과한 이후였기 때문에 ‘진실 발견의 어려움과 조사의 지연에 따른 피해자 보상의 지체가 불가피하다’ 고 단정해 버렸다. 과잉진압의 책임을 묻는다면, 교도소 습격 등의 불법행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처벌은 문제해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화합을 저해’ 한다고 하여 관련된 논의를 건의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이 시기 총체적 관점에서 5·18의 성격 문제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5·18의 성격을 함축하는 명칭에 있어서 “의거” 와 “항쟁” 이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 계엄군의 진압을 거론해야 하는 ‘책임’ 문제가 뒤 따랐다. 따라서 민화위는 5·18을 ‘민주화투쟁의 일환’ 이라고 표현하면서 민중의 비판을 모면하려했다. 결국 민화위는 5·18을 ‘광주 학생·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투쟁의 일환’ 으로 규정하였고, ‘과잉진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는 내용의 “광주사태 치유방안에 관한 건의안” 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정리하였다.

뒤이어 1988년 4월 1일 정부는 ‘광주사태 치유대책’ 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일련의 민화위 활동을 기반으로 5·18 문제를 위한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당시 정부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성의 있는 지원, 망월동묘지의 공원화와 위령탑 등이 건립될 경우

정부 지원, 부상자의 치유와 유가족 지원 및 유가족 자녀에 대한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기타 보상 사업 등을 “치유대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훈적 차원의 보상은 배제되었으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정략적으로 배제한 채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몇 차례 걸쳐 ‘광주사태’의 치유와 관련된 담화 또는 발언이 계속되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결코 수용되지 않았다.

요컨대 노태우 집권기 정부는 국가의 과잉진압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불법 행위와 과격 행위도 사건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관점 또한 고수하였다. 결국 1980년 5·18이라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여 어떻게 전개되었고, 실제 내용이 무엇이며, 누가 사건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정략적 선전도구에 불과하였다.

3. 1988년 국회의 광주청문회

이에 대항하여 5·18 관련자들과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정부의 정책 노선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그러다 제13대 총선결과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을 이용하여 1988년 7월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5·18 진상규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는 1988년 7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1989년 12월 30일까지 총 32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5·18에 관한 사건들을 조사하였다. 결국 ‘광주청문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사건의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해야만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주요 관련자들은 진술을 거부하였고,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데 현실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들이 밝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광주청문회는 5·18의 주요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발표명령계통과 지휘체계의 이원화 배경, 민간인 사망자의 규모, 미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문제 등 다수의 사안들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9년 국회청문회 이후, 5·18관련자 및 정치인, 재야 세력들은 5·18과 관련된 ‘백서’를 발간하려고 했으나, 전두환의 청문회 참석 문제

를 놓고 갈등을 빚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김영삼은 집권한 첫 해 1993년 5월 13일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며 현 정부는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로서 그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5·18을 민주정부의 성립의 한 계기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김영삼의 집권 과정에서 배태되었던 정치적 성격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제 해결”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이 ‘결코 암울했던 시절의 치욕을 다시 들추어내어 갈등을 재연하거나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은 아닐 것’ 이라고 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 라고만 하였다. 책임자 처벌은 ‘오늘에 다시 보복적인 한풀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잊지는 말되 과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 고 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이 ‘앞으로 대안’ 을 실행해 나가자는 억측에 다름 아니었다.

이 담화에 대해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선 진상규명, 후 명예회복을 요구하면서 전국의 각계각층으로 반발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2·12, 5·18 고소고발사건>으로 귀결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는 56공화국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1994년 5월 13일부터 1995년 4월 3일 사이에 피고소·고발인 58명에 대하여 총 70여 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 ‘국가기관에 의한 최종적이고 완벽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졌다고 하며, 1995년 7월 18일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다. 이에 검찰의 5·18불기소 결정에 항의하여 기소 촉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서명 운동 등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4. 1995년 5·18특별법 제정 이후

그런데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내용이 국회에서 폭로되면서 대선 자금 문제로 정국의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영삼은 5·18특별법 제정 지시를 내렸고, 이에 의거하여 ‘12·12 및 5·18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이로부터 이들 만에 두 대통령이 전격 구속되었고,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

벌을 위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검찰 수사에 의해서 5·18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의 이동과 작전일지 및 진압에 참여 혹은 동원된 계엄군에 관한 자료, 당시 정부와 보안부대 등의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5·18특별법을 적용하면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은 30만 쪽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5·18기념재단이 행정 소송을 통해 공개된 수사 기록은 5만여 쪽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5·18특별법에 의거한 조사 결과, 재판 도중 사망자를 제외한 15명에 대한 처벌이 1997년 4월 18일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주요하게 적용된 죄목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 ‘좌익 선동자에 의해 폭동’ 이라 규정했던 정부의 입장은 원천적으로 부정되어야 했고, 이와 관련하여 후속작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5·18과 관련하여 현장 지휘관들은 책임은 묻지 않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제의하였고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고, 다른 관련자들은 특별 사면되었다.

Ⅲ. 진상규명의 성과

진상규명의 성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1980년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쓰여지기 시작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론, 또는 국가적 공론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고, 사회 전반에 수용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5·18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어떠한 입장,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5·18에 대한 진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축적되어 왔는지, 그리고 1988년, 그리고 1998년 이후 5·18이 국가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들이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져 왔는지,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1980년 5월 5·18 시기 광주지역에서 생산되었던 진실의 내용, 그리고 항쟁 이후 유족 및 단체, 학계 그리고 국가기관 등에서 진행되었던 진상규명의 내용과

그 성과를 정리해 본다.

1. 민간영역에서의 성과

1980년 5·18항쟁은 1980년 5월 18일의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 선포와 그 배경에 대한 의문,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을 요구하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항쟁 시기 항쟁의 ‘사실’에 대한 지속적 의문과, 계엄군, 정부 그리고 항쟁 주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실들을 생산했다.

1980년 5월경 광주지역에서 배포된 각종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당시 지역민과 저항세력이 인식했던 ‘사실’ 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 상황을 접하고 있었다. 즉, 계엄령으로 인해 공공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언비어는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언론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 군인에게 약을 먹였다거나, 씨를 말리러 왔다는 소문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군인들이 하는 짓은 소문이 참임을 지역민들에게 ‘확인’ 시켰다. 그 내용은 “유신잔당 및 전투환 놈의 사주를 받은 공수부대·특수부대”가 민주 투쟁 중에 있는 “죄 없는 학생들”을 “무차별” 적으로 “살인”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소문은 항쟁 발발 직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살인적인 진압의 실상(實像)을 급속히 확산(擴散)시켰다. 18일 이후 등장하는 ‘유언비어(流言蜚語)’의 내용은 대략 아래의 내용이었다.

-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여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려냈다.
임산부를 대검으로 찢러 태아를 꺼내 길가에 뿌렸다.

위와 같이 유언비어는 학생 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의 충돌을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경상도 군인들의 살인으로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상도 군인들은 약을 먹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들”이라고 전해졌다. 지역의 피해 대상들은 대부분 어린이, 여성이나 대학생,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였다. 문제가 된 것은 위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전단” · “공수부대”의 “잔악한

만행”이었다. 아래의 내용을 보자.

- 죄없는 학생들을 총칼로 찢러 죽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트럭으로 실어가며 부녀자를 발가벗겨 총칼로 찌르는 놈들이 이 누구란 말입니까?

- 공산당보다도 더 흉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의 사병 특전단은 우리 젊은 학생들을 총칼로 찢러 배를 갈라 죽였으며 처녀들의 귀를 자르고 부녀자들을 발가벗겨 배를 갈라 죽였으며 그 창자를 거리에 널고 심지어는 어린애를 개머리판으로 골통을 부셔 죽였다.

위의 내용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시기 19일~20일부터 광주 지역에서 배포되었던 유인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공수부대·특수부대”의 배후 세력으로 “최규하와 신현확 그리고 전두환”이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두환과 ‘유신잔당’의 정치적 야욕은 이미 이전부터 ‘대학생’들 사이에서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었고, 광주에서의 만행은 이들의 음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로 이해되어왔던 ‘김대중의 체포’ 소식은 지역민과 저항세력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지역민과 저항세력은 정부 및 계엄군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계엄군의 만행에 저항하는 지역민과 저항세력을 “폭도”나 “소수의 불순분자”라고 왜곡하는 언론과 정부의 보도태도였다.

5·18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정부는 1980년 5월 18일 계엄 상황을 정권 찬탈의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정부와 계엄군은 학생들의 시위를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행위로 규정하였고, 특히 광주 지역민들에게는 ‘항쟁의 진압을 위한 계엄령’에 따를 것을 명명하였다.

- 시민 여러분!

외부에서 많은 폭도들이 잠입,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낮선 폭도들은 신고하시거나 인상착의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위의 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계엄군은 광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

의 주체를 “폭도” 라고 명명했다. 계엄군에게 있어 “광주시민” 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 을 말한다. “폭도” 는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으로서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 는 “불순분자” 이자, 오염 및 간첩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계엄군은 광주 지역민을 시민과 폭도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분법은 넓게는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좁게는 광주 지역민에 대한 정부 및 계엄군의 광주항쟁에 대한 진압 전략을 암시한다. 정부와 계엄군은 ‘시민’ 을 기본적으로 ‘애국심과 선량함을 소유한 존재’ 로, 광주의 상황 속에서는 “폭도와 구분될 수 있는” ‘이성과 판단력을 갖춘 존재’ 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폭도는 파괴·방화·선동·자극하는 불법을 행하는 “난폭한” 소수자였다. 양자는 그들의 외적 모습과 행동에 의해 구분되기도 했다. “흥분한” 청년과 “총” 을 든 학생들은 폭도로 오인되었기 때문에 “자수” 하고 “집” 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 받았고, 시민들은 계엄군의 요구 사항을 듣고 무기를 반납하고 “집안” 으로 귀가해야만 했다.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거리” 에 있거나, 총기를 들고 있으면 계엄군이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인 ‘폭도’ 로 규정되었다.

즉 정부와 계엄군은 시위 군중을 애국심과 이성(理性)을 기준으로 시민과 폭도로 구분했다. 정부가 규정하는 ‘이성’ 을 가진 시민은 지역과 사회,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계엄군과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주체였다. 반대로 폭도는 거리를 방황하는 파괴자로 시민과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타자(他者)로 규정되었다.

1980년 5월 18일은 정부는 당시의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하면서 주요 정치인과 ‘운동권’ 학생들을 잡아들였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에게 학원 소요와 교외 소요의 국가적 시련의 속에서 “국민 모두” 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과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전국 주요대학에는 계엄군이 급파되었고 1980년 봄부터 진행되어 왔던 학생들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그리고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벌어진 학생들과의 시위를 과격하게 진압했다. 이에 지역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합세하자 공수부대를 투입 더욱 더 잔악한 진압작전을 개시했다.

특히 정부는 당시의 상황을 북한 공산 집단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며, 시민·학생의 저항 활동을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 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또한 이들이 “터무니없는 악성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며 방화와 장비 및 재산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 사태를 선동하고, 난동을 선도한다고 대 내·외적으로 알렸다. 지역민과 저항세력이 주장하는 ‘사실’ 들은 “유언비어”로 폄하되었으며, 오히려 ‘체포와 진압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정부와 계엄군은 지역민의 저항과 ‘북괴의 간첩 활동’을 동일하게 선전하며, 광주를 전국적 상황과 분리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명분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결국, 1980년 5·18항쟁은 정권을 찬탈하고자 했던 신군부 세력 및 계엄군과 이에 저항하는 지역민 및 저항세력 사이의 ‘사실 투쟁’에 다름 아니었다. 동일한 사건과 정황을 각각 진압과 저항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담론 투쟁’이자 “진실투쟁”이었다. 특히 정부와 계엄군의 전략적인 왜곡보도는 지역민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경험하고 확인했던 사실들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인정투쟁”이기도 했다.

그런데 5·18항쟁은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한 도청진압을 통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민 및 저항세력의 투쟁은 실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 및 저항세력의 ‘사실’은 “유언비어”로 낙인 찍혔고, 정부 및 계엄군에 의해 정리된 ‘사태’의 과정만이 ‘(전)국가적 사실’로 유포되었다. 사태의 과정은 지방의 정부에서 관찰·정리한 「5·18사태일지」와 「상황일지」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이들 문서들은 “학원사태의 개요”로 구성되었고, 나아가 김대중 및 1980년대 정치세력을 억압하는 ‘내란음모 사건’의 밑그림이 되었다.

그러나 항쟁이 진압군에 의해 ‘실패’했다고 하여, 저항세력의 ‘진실투쟁’이 멈춰진 것은 아니었다. 저항세력은 이미, 항쟁 기간 중 분산되어 있는 항쟁기간의 ‘사실’들을 정리하여 「5·18의거 이후 경과일지」와 같은 10일간의 사실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내용들은 광주이외의 전국과 해외에 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찢어진 기록 - 어느 목격자의 증언」), 전면적인 반정부·민주화 투쟁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 주시오”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보고>-광주 시민과 연대하는 재독 한국학생의 모임). 항쟁이 진압된 직후인 1980년 5월 29일부터 전국적 차원에서 5·18항쟁의 ‘진실투쟁’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를 ‘5월 운동’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18체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요구’ 하는 진실투쟁은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5원칙’의 의제는 1980년 5·18항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앞서 제시한 지역민 및 저항세력의 ‘사실’을 정리해 보면 ‘5원칙’의 의제는 이미 1980년 5월에서부터 요구되기 시작했다.

10일간의 항쟁 기간 중 지역민 및 저항 세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던 5·18항쟁의 발발과 관련된 근본적 요구사항이다. 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계엄사의 내용은 전혀 거짓이며 진실은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이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항 세력의 주된 요구사항이며, 사망자 사상자 등과 관련된 내용의 진상이 명확하게 조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시 학생운동권 및 민주화운동 진영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항쟁이 이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계엄군의 만행’과 같은 항쟁의 원인이 전두환 등 유신잔당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단과 처벌을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민과 저항세력은 정부와 언론의 “왜곡·조작보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는 계엄군의 만행과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에 의연히 맞서는 지역민들을 정부와 언론이 “불순분자의 책동에 휘말린 폭도”로 전국적으로 선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이 지역, 즉 호남·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선’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명예’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었다.

또한 이들은 10일간 항쟁 동안 벌어진 살상과 피해의 대가를 요구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상징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보상’은 곧 국가의 공식적 사과, 정확한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물질적 차원의 피해보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시에 사상자에 대한 장례가 잘 치러지고 항쟁의 의의 또한 다음 세대에게 명확히 전해지기를 희망했다. 결국 5·18항쟁 시기 지역민과 저항세력은 계엄군의 잔악한 진압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전두환과 같은 책임자의 처벌, 피해에 대한 보상, 왜곡 정정을 통한 명예회복,

사망자에 대한 예우, 지역에 대한 치유 등 몇 가지 원천적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던 것이다.

비록 항쟁이 정부와 계엄군의 무력에 진압되었지만, 항쟁 시기의 요구사항은 항쟁 이후 ‘살아남은 자들의 과제’가 되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다.

2. 제도권 내에서의 진상규명

1) 「민중화합추진위원회와 1989년 “광주청문회”

1986년까지만 해도 5·18의 ‘사실’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내용이 전부였고, 이에 대한 공식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회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한 정국의 변화로 인해 5·18의 진상을 국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만들었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민정당은 1988년 1월 16일 국민화합과 사회개혁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이름을 걸고 「민화위」를 구성하여 5·18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부 관련자의 증언 청취를 포함하여 38일간의 활동 끝에 5·18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그 해 4월 1일 그 건의를 수용하여 ‘광주사태 치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오히려 민간단체에서의 5·18 진상규명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1988년 4월에 실시된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으며, 그로 인해 집권여당이 수세에 몰리는 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5·18 등의 진상규명 요구는 국회로 모아졌으며,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광주 특위는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 비리를 규명하려는 5공비리 특위와 함께 13대 국회의 개원 초기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집권당 내부의 사정과 5·18진상규명 및 '5공 비리' 청산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전개로 인해 정치권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광주청문회였다.

제6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던 국정감사제도를 16년 만에 부활시켰으며, 청문회를 헌정사상 최초로 도입하였다. 국회에서는 1988년 6월 27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4011호)에 따라 제142차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 통과되어 ‘광주특위’ 가 구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5공비리특위’ 도 구성되었다. 제한적이거나 5·18의 진상은 1988년 6월 27일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구성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광주청문회’ 를 통하여 공개되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이 주도한 3당 합당(1990. 2.)으로 발포책임자 규명 등 핵심적 사항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광주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① 5·18의 발생원인 ② 집단발포 문제 ③ 미국과 관계 등 세 가지로 모아졌고, 그 과정에서 ④ 5·18의 성격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① 5·18의 발생원인 : ‘과잉진압 vs 과격시위’

5월 광주항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5공화국의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사태를 유도·조작했다는 ‘사전 조작설’, 김대중이 민주적 절차로는 정권획득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란을 음모했고 그에 동조한 사람들이 사태를 일으켰다는 ‘김대중 내란음모설’, 그리고 계엄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해 일어났다는 ‘과잉진압설’ 이 있다. 청문회에서는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있었다’ 는 주장과 ‘과격시위 때문에 과잉진압이 유발됐다’ 는 반론이 쟁점이었다. 즉 증인으로 5·18관련자들은 군의 과잉진압을 주장한데 비해, 정부와 진압관련 증인들은 시위대의 폭력적 시위를 강조하면서 ‘진압의 정당성’ 을 주장하였다. 이에 5·18항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비오 신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1989년 2월 23일) ‘사제적 양심’ 을 걸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 으로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 고 증언하면서, 진압군의 ‘헬기 기총소사’ 등 5월 광주의 진실의 증언했다.

② 집단발포는 누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5·18항쟁에서 군인들이 자행했던 참혹한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자극받아 압도적인 여론 ‘집단발포의 책임’ 문제로 이어졌다. 우선 진압군 관련자들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와 관련하여 ‘군 자위권’ 이라는 개념으로 시위대의 행동에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집단발포는 당시 시위대들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단발포는 치밀한 준

비 아래서 이루어졌으며 건물의 옥상 등에서 저격병들이 시위 주동자들을 겨냥해 집중사격을 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집단발포 명령과 관련하여 증언을 한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발포를 건의한 사람도,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의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주요 증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전두환 : 자기 권한 밖의 일이었다.
- 이희성 : 결코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자위권 행사만을 시달렸다.
- 정호용 : 단지 지원과 조언만 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특전사 사령관이었던 정호용과 31사단장 정웅 사이의 엇갈리는 주장이 나왔다. 정호용은 “휘하 부대는 타부대에 배속시켰으므로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고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육군본부 → 2군사령부 → 전교사 → 31사단으로 이어지는 군령계통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웅을 당시 공식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고 지휘권이 행사되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지휘체계의 이원화론’과 ‘신군부 직접지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찬은 이들의 주장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③ 미국과 5·18항쟁의 관계

5·18항쟁에서 미국과의 관련성 문제는 국회청문회 과정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은 쟁점이었다. 당시 야당 가운데서는 평민당만이 미국에게 ‘목인 내지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할 뿐이었다. 국회에 광주특위가 설치되었을 때 미국은 특위의 조사활동에 협조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외무부는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대사와 존 위컴 장군에게 광주특위에서의 증언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무성은 “글라이스틴이나 위컴이 한국 주재 미국관리로서의 공무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광주특위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국무성은 광주특위의 서면질문에 대한 회답에는 동의하자 광주특위가 준비한 48개항의 질문이 미국무성에 전달되었다(1989년 3월 17일). 이에 대해 미국무성은 1979년 12·12라는 하극상의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억압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의 등장과정에 “미국은 책임이 없다” 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이 12·12와 5·17 계엄확대 및 광주봉기에 대한 무력진압과정에서 군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은 ‘12·12와 5·18에 관하여 결정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12·12와 5·18항쟁에 동원된 한국 군부대들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두환세력이 12·12로 군부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미국은 신군부와 긴장관계에 있었다’ 는 것이다.

④ 5·18의 성격문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더 이상 5·18의 진실을 은폐할 수 없게 되면서 5·18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었다. 결국 광주청문회는 당시까지의 5·18항쟁에 대한 부정적 규정이었던 ‘광주폭동사태’, ‘김대중의 내란음모 속에서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 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은 ‘광주민주화운동’ 론을 통해 5·18을 “광주시민·학생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규정하면서도, 시위대와 군경간의 충돌 과정에서 격화된 무력 충돌로 이해하는 쌍방책임론적 논리로 정리하였다.

1988~89년 진행된 광주청문회는 ‘청문회’ 가 구성되었던 정치적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5·18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 결국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주도한 12·12쿠데타와 5·18민중항쟁의 관계, 1980년 초 전군에 걸쳐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폭동진압훈련의 실시되었다는 사실, 5·17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와 신군부의 정권찬탈과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 하고 5·18의 실상과 계엄군 진압과정 및 그 참상과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의 내용 그리고 5·18항쟁과 미국의 관계가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공개’ 되었을 뿐이었다. 특히, 전두환의 국회 증언과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이 적당한 선에서 청문회를 마무리하려는 합의를 맺었던 것으로 보아 5·18의 ‘진상’ 이 알려졌다를 뿐 ‘사회적 규명’ 에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3. 국가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1988년에 5·18 광주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이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되어 처벌받았다. 하지만 5·18과 관련하여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명령, 지휘권 이원화, 외곽봉쇄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실종자 등의 문제 등이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국가의 의한 진상규명 작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국방부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규명하도록 했다. 이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청문회,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국방부 내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관련된 장병들과의 면담을 통해 ‘5·18진상규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 자료를 제외한 4만 8천여쪽의 자료를 수집, 시위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 71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상에 접근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큰 성과는 그 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군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계엄사와 육군본부의 「작전상황일지」, 보안사의 여러 종류의 「일일보고」, 전교사·31사·11공수여단 등 작전부대의 「작전상황일지」, 전교사의 「광주소요사태 분석」 등의 평가분석 자료와 계엄사 「계엄위원회 회의록」, 5월 17일에 열렸던 「전국주요지휘관회의록」(필사본) 등 총 57권의 자료를 기무사령부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무사 자료 중에는 합동수사본부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5·18’을 연계시키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광주교도소습격사건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자료도 있었다.

또한 1988~89년 작성된 ‘국회 광주 청문회 대비 자료’는 군부가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었다. 이들 자료의 작성자는 국방부 511위원회와 보안사의 511분석반으로 구분된다. 국방부 511위원회는 당시 국방부에서 발굴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한 「광주사태」라는 책자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 시간대별로 부대(대대 또는 지역대 단위) 배치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의한 진상규명 작업은 최근 노무현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국가 기관에 의한 다방면의 과거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5·18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24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발간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보고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 또는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 명령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발표 명령에 관한 문서나 발표 명령 계통을 설명해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발표 명령권자 미확인)
- 진상규명에 있어서 오랜 숙원 사업으로 남아있던 실종자 확인 및 암매장지 발굴 등에 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 “지휘권의 혼란”에 관한 논란 : 제2군 사령부와 제11공수부대가 실탄 분배에 있어서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볼 때, 보고 계통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 “광주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 : 당시 제11공수 보안반이 작성한 보고서는 1989년 청문회 당시 홍금숙씨의 진술서와 함께 보안사에 존안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소실된 상태이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군인들이 면담을 거부해 정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다.
-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공개 문제. 여전히 많은 자료들의 공개가 거부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결국, 노무현 정권기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은 그 동안 자료 접근이 가장 어려웠던 군 관련 자료를 통해 5·18관련 사실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1980년 5월 21일에 개최된 한 회의에서 군 자위권 발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회의 결과를 기록한 자료에서 전두환 합수본부장에 관한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가 있음으로 볼 때, 전두환이 군 자위권 발동에 주요하게 관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계엄군으로 적극적인 진압을 펼쳤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무산되기도 하였다.

IV. 진상규명의 한계 및 과제

1980년 5월 이후 광주시민들은 계엄군과 전 국민을 향해 “5월 18일 만행의 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말했다. 이것은 1980년 광주항쟁 기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이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광주항쟁이 신군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유폐된 이후 항쟁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1980년 광주항쟁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항쟁 시기 사망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 즉 구속자, 부상자 그리고 사망자의 유가족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0년 이후 ‘5월 운동’ 이라 일컬어지는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상규명운동” 이었다.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6월 항쟁’ 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 을 전 사회적으로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후의 진상규명 운동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역사적 의의와 목적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졌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 의해 “광주사태 치유방안” 이 발표되면서 공식적인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결국 1980년 광주항쟁의 진실은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절차를 거쳐 ‘간접적’ 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광주항쟁에 대한 정치적·법률적 진상규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988~89년 ‘광주청문회’ 는 “광주사태” 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불러 일으켰지만, 지난 시기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력이 원하는 수준의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주항쟁 피해자 및 관련단체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광주항쟁과 직접 관련된 인물들을 고소·고발하면서 법적 진상규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관련사건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을 결정하면서 법률을 통한 진상규명이 실행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5·18관련단체 및 사회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서명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1995년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광주항쟁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작업이 실행되었다.

“5·18특별법” 에 의해 전두환·노태우 및 12·12 및 5·18사건의 관련자

들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라는 죄목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국민화합” 이라는 명목 아래 이들의 특별 사면을 건의·단행하였고, 1998년까지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특별 복권되었다. 이후 정부는 ‘과거사청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을 설립하였고, 5·18 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 민주화운동관련 사건, 그리고 각종 의문사 등 과거 국가권력 및 군부독재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만행의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5·18을 비롯한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은 과거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등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짐에 따라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실시되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이 기획·진행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광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었던 민주화운동 및 정치적 격변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여타의 과거청산작업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진상규명을 실천해 왔던 주체, 즉 피해자와 유가족 및 5·18단체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정치정당 그리고 국가기관 등의 역학관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들에 대한 정리와 기록 등 “역사적 사실화”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진상규명의 성과를 살펴보면, 1980년 5월 광주항쟁 시기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사실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1980년 이후 소위 비합법적 민간단체에서 발행한 관련 유인물 등의 내용(예컨대 『찢어진 깃폭』 등)이 ‘국가에 의해 인정’ 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찾아졌을 뿐이다. 결국 그 동안의 5·18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국가에 의해 “사적 논의” 로 유폐되었던 항쟁에 대한 논의를 “공적 논의” 로 확장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최근의 “과거청산” 의 관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이해는 제도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5·18특별법 및 이후 과거청산 관련 법률제정’ 에 대한 법학적 접근, ‘과거청산의 유형 및 실행과정’ 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접근, ‘과거청산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접근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1980년 이후 전개된 ‘5월 운동’ 속에서 5·18진상규명 “운동” 이 가지는 사회사적 의미와 이것의 법제화 과정을 몇

가지 단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제화와 사법집행 그리고 여타 과거청산의 제도적 실행과정을 세계 각국의 유형과 비교·분석하면서 ‘한국의 과거청산’이 갖는 특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 결과 세계 보편사적 입장에서 5·18의 진상규명은 “성공적 사례”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한국사적 맥락에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완의 실패”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한편 이러한 변화 과정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1982년 고등학교 『국사』에는 “그(1026) 이후 한때 혼란상태가 계속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0년 고등학교 『국사』에는 “1026 사태로 정치 사회는 한때 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이어서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 ... 이 시기를 전후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광주에서 비롯된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고 쓰여져 있다. 8년의 시간은 술한 우여곡절 속에서 5·18의 성격을 ‘혼란상태로서의 5·18’에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론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지배의 새로운 방어논리라는 부정적 의미 또한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변화된 국사교과서 내용이나 청문회의 결론처럼 민주화운동이라는 5·18의 성격 규정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진실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그 역사성과 혁명성을 거세하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만들려는, 그리하여 현재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과거완료형’의 역사로 해석하려는 입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청문회의 결론과는 달리, 학술적인 역사서로서 5·18을 ‘광주민중항쟁’으로 처음 기록한 한국역사연구회의 『한국사 강의』는 “광주민중항쟁은 4·19 이후 최대의 반독재 민주항쟁이었다. 시민들의 자기 방어적 무장에 의해 시민전쟁의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었으나, 비조직적 시민군으로서는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지배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민중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군부 파쇼의 폭압적 성격과 그것을 지원한 미국의 본질에 대해 점차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고 적고 있다. 이러한 ‘광주민중항쟁’ 론은 5·18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거나 민주 헌정의 회복을 요구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다는 해석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단초를 제시해 준 민중항쟁 혹은 민중봉기로서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변혁주체로서의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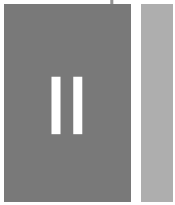
그렇다면 5·18의 실제적 성격, 그 역사적 진실은 어떠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과 민중항쟁이라는 개념을 상호충돌적이거나 또는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프랑스혁명이 ‘사회혁명’ 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민주화운동’ 이 아닌 것은 아니듯이, ‘민주화운동’ 과 ‘민중항쟁’ 이 양자택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5·18을 단순히 민주화운동으로 부를 경우 지나치게 넓은 외연을 가진 개념화로 5·18의 특성이 희석된다는 점, 나아가 민주화운동론이 민주화운동과 민중항쟁을 양자택일적으로 설정하고 민중항쟁론을 비판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는 손호철의 지적은 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5·18은 민주화운동이면서도 동시에 민중항쟁이라고 성격 규정할 수 있다.

현재 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사법적 집행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정치적 복권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서의 진상규명작업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정치적 타협에 의해 때로는 미봉적 차원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5·18은 한국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과거청산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청산 작업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 바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진상규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전개되었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서의 진상규명작업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정치적 타협에 의해 때로는 미봉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기	내용	비고-미해결
전두환 정권	북한의 고정 간첩과 김대중의 추종 세력들을 지칭하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	‘지역감정’ 에 의한 발발 (유언비어)

노태우 정권 (1987)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국민화합분과위원회’ -계엄군의 과잉진압이 발단 -광주 학생·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투쟁	- 과잉진압의 책임 - 사건의 구체적 내용, 전개, 책임 등
광주 청문회 (1988~89)	- 12·12, 5·18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주도 - 1980년 초 전군에 폭동진압훈련 실행 - 5·17비상계엄과 신군부의 정권찬탈 음모 - 진압과정과 참상을 공개 - 계엄군의 집단 발포, 민간인 학살 공개 - 미국의 관련 사실	- 발포명령계통과 지휘체 계의 이원화 배경 - 민간인 사망자의 규모 - 미국의 역할과 책임 등
김영삼 정권 (1995)	전두환·노태우 및 관련자 15명에 대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죄	- 현장 지휘관
노무현 정권 (200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광주시내 계엄군 배치 5월 14일. - 5월 15일 ~ 17일 제7공수여단 ‘총정작전’ - 5월 19일 오후 4시 계림동 첫 발포 - 5월 20일 광주역 발포 - 5월 19일 김경철 사망 - 5월 21일 도청 앞 발포 - 연행된 시위자에게 폭력 행사 - 진압 부대 간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사망 왜곡	- 발포 명령자 -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 실종자 및 암매장 -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 사건 - 자료 공개 등



특별법

새로운 모색과 시작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

장원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1. 서론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운동은 십여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5년여 기간 동안 여순사건에 관하여도 일부 진상을 밝혔으나, 2010년 말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한국전쟁전후 해당 지역의 피해에 관하여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을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심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입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며, 여순사건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2. 한국전쟁전후 지역 사건 관련 법률

① 기존 법률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1996년 1월 5일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0년 1월 12일 제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년 3월 5일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노근리사건"이라 함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② 참고 법률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년 8월 6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2006년 3월 24일)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3년 6월 4일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③ 여순사건 관련 법률안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김충조의원 2001년 4월 6일, 2011년 1월 31일 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10월 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순천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에 가담한 자의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 및 부상당하고 가옥 등이 소실(燒失)된 사건을 말한다.

* 2011년 1월 31일 안

제2조 제2호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수순천10·19사건 피해를 입은 사람

제10조(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김성곤의원 2013년 2월 28일 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진압과정과 토벌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 사건을 말한다.

*김성곤안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위원회(김충조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3. 새로운 모색

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원혜영 의원 2004년 10월 20일 발의)

제3조(진실규명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2. 1948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3.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2005년 5월 31일 제정, 이하 진화위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③ 해방 후 한국전쟁 발발 전에 있었던 우리 사회의 학살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으로 1946년 10월의 대구 10월항쟁(2016년 8월 1일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1948년 4월의 제주43사건, 1948년 10월의 여순사건 등이 있다. 이 중 제주43사건은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되었으

나 나머지 두 사건에 관하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극히 일부에 한하여 진상규명을 하였을뿐 총체적인 진실 규명 및 화해 작업을 하지는 못하였다.

현 상황에서 여순사건만을 다루는 특별법안 이외에 새로운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수립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혹은 한국전쟁 이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두 사건만을 다룰 수도 있고, 범위를 넓혀 위 시기의 다른 사건도 다룰 수 있다.

둘째, 진화위법 개정

- 진화위법 체계 아래에서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민간인 희생 사건과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분류한다.

4. 결론

우리는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그동안 사용하였다. 그 시기를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정부 수립 후 한국전쟁 이전 시기, 한국전쟁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진화위법을 개정하면서 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5·18특별법 제정 운동

- 1995년 7월, 검찰의 공소권 없음 발표로부터 특별법 제정까지¹⁾ -

박강배 (광주문화재단)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된 것은 1980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뒤의 일이었고, 지금은 특별법이 제정 된지 21년이 지났다.

○ 이 글에서는 1995년 7월, 검찰의 공소권 없음 발표로부터 그해 12월 특별법 제정까지의 운동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995년의 정치운동적 상황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므로 당시의 것을 지금에 그대로 적용 할 수 있지는 못할 것인바, 법 제정 21년이 지난 후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 <검찰의 5·18 학살자 불기소 발표이후 투쟁경과>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 같다.

○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폭력 해결의 원칙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손해배상 △정신계승일 것인바, 이른바 이 5원칙에 비추어 보면 5·18민중항쟁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다.

○ 당시 상황

- 오랜 군사정권을 뒤로하고 문민정부 출범(1993년,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 가해자 처리를 위한 사법적 시도(고소, 고발, 특별법 제정 등 법적 해결을 시도)

시기	주체	내용
1994.5.13.	정동년 등 5·18피해자 322명, 김상근 등 5·18국민위원회 위원	서울지검에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1) 이 글은 정호기가 (재)5·18기념재단의 학술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발표한 <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 : '특별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를 발췌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5·18 학살자 불기소 발표이후 투쟁경과>는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작성한 것을 요약 한 것이다.

1994.5.1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 6개 도시에서 전두환 등 35명에 대한 고발장 접수. 서울은 접수 거부
1994.7.	국민위원회 주관 시민 31,000여명	국민고발운동 전개
1994.10.19.	김상현 의원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등 22명	전두환 등 10여명을 내란혐의로 고소 고발

-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로부터 특별법 제정 운동이 본격화 됨.

-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비자금 4천억원’ 을 폭로하면서 6공화국 비리척결이 새로운 의제로 추가 됨.

○ 조직적 활동(운동의 주체)

- △518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 △한총련/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네트워크 △종교계와 전문가 단체

- 518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 운동의 방법

- 각계각층 전국적으로 집회, 시위, 단식, 농성, 점거, 성명발표, 토론회, 공청회, 청원, 결의문 채택, 지지선언, 시국선언, 서명, 기자회견, 고소, 고발, 헌법소원, 신문기고, 국토 순례, 기도회, 향의방문, 동맹휴업 등등

- △교수들의 시국선언 △종교계의 입장발표 △변호사의사농민노동자 각종 단체의 발표 △지방의회의 결의문 채택 △법률가 등 전문가들의 공청화토론회를 통한 법제정 필요성 촉구 등

- △광주향교 유림 대표단 90명 성명 △민교협 교수 농성 △김수환 추기경 메시지 발표 △조계종 간부 471명 성명발표 △예장기장 등 목회자 성명서명 △전북 종교 4개 종단 성명발표 △서울 초중고 교사 1500여명 시국선언 △민변 회원 기두서명 △부산경남 지역 의사 322명 성명 △서울시 의원 100여명 농성 △인의협 등 전국 의사 2375명 성명 △전북 치과의사협회원 194명 성명 △김광현 여수시장 등 172명 기두행진 △대구 초중고 교사 78개교 217명 국회에 청원 △전국 42개 대학 법학교수 127명 헌법재판소에 의견제출 △사법연수생자치회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 △충남 예산군 23개 단체 성

명 △신림동 고시 수험생 서명추진모임 2067명 서명

-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 130만명(해외 2만명)

○ 운동의 의의

- 고소고발로 시작해서 특별법 제정 → 가해자 처벌을 이룬 사회운동
- 사회운동이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을 강제
- 지난 정부의 부정부패 등 척결 시작
- 운동 주체의 역량강화와 역할 분담, 다양한 운동 방법 → 효율적 사회운동
- 국가폭력 청산 시작

<검찰의 5·18 학살자 불기소 발표이후 투쟁경과>

---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작성 ---

1995년

7/18 - 검찰, 5·18학살자들에 대한 ‘공소권 포기’ 발표

- 5·18국민위, 전국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광주지역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비난성명 쏟아짐.

7/19 - 5·18유족과 부상자 등 150여명 명동성당 농성 시작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항의농성 돌입

- 검찰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종결에 대한 여성 200인 선언 발표

7/20 - 민변, 위증혐의로 전두환, 이희성 등 7명을 국회위증죄로 고발

7/21 - 광주지역 조찬회동으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

- 경실련,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항의집회’

7/22 -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1차 국민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서울은 국민위원회 주최, 종묘공원에서 2,500여명 참가)

- 민교협, 창립8주년 기념성명에서 ‘특별법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7/24 - 정동년 5·18민중운동연합 의장 등 5·18고소인 322명이 헌법소원 제출

- 정상용 의원과 광주지역 의원 등 100여명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순례 시작(8월 5일 서울입성. 8월 7일 청와대 방문까지 15일간 진행됨.)

- 김영진 의원, 국회 기도실에서 5·18학살자 불기소처분 항의 및 기소촉구를 위한 국회 단식농성을 시작(~8월 6일)

7/25 - 김상근 5·18국민위원회 상임대표와 정동년 5·18민중운동연합 의장 고소인 322명과 고발인 294명을 대표하여 항고제출. (7월 28일 기각됨.)

- 광주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범시민대회 개최

7/27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성명 발표

7/28 - 5·18국민위원회와 광주전남 공대위 공동주최로 장충단 공원에서 2차 국민대회 개최(3,000명 참석, 한총련을 중심으로 집회 후 연희동 진격투쟁)

- 대한변협, ‘검찰의 5·18사건 결정에 관하여’ 공청회 개최

7/29 - 대검에 재항고장 재출. 역시 기각됨.

7/31 - 고려대 교수 131명, ‘검찰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표. 이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름. (12월 13일 현재 전국 100개 대학 6,678명 서명참가)

8/1 - 광주전남 공대위가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시작

8/3 - 광주지역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8/7 - 한총련소속 학생 60여명, 명동성당에서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단식농성’ 돌입, 13일까지 전개

- 참여연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8/8 - 광주향교 유림대표 90여명, ‘5·18사건 피의자 기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8/9 - 명동성당 농성단과 한총련 단식단, 남대문에서 선전을 전개하다 전원 연행됨.

8/10 - 서울연합 주최로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시민 결의대회 개최

8/11 - 정동년 등 303명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1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8/14 - 민교협 교수, ‘농성돌입’ (16일까지 진행됨.)

8/15 - 김수환 추기경, ‘5·18학살자를 처벌하여 민주질서를 바로 잡자는 메시지’ 발표

8/16 - 5·18국민위원회와 광주전남 공대위 공동주최로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3차 국민대회 개최. 경찰 대회장에 불법 난입하여 대회참가자를 연행하고 폭행함. 이 과정에서 단국대 2학년 장원호 씨가 실명하고 수 십 명이 부상당함. 이 대회와 관련 18명이 구속됨.

8/17 - 전국연합회원과 명동성당농성단, 경찰청 항의방문. 경찰 전국연합회원 17명 연행, 28시간 불법감금함.

8/21 - 전국연합과 민노총, 경찰의 5·18대회장 불법난입, 기자구타, 폭력진압 규탄대회 개최

8/23 - 서울시 의회, ‘5·18특별법 제정 결의문’ 채택

8/24 - 전국의 서명교수, ‘5·18내란 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 교수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과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법률(안)] 입법청원

8/25 - 교수대표단,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검찰의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8/26 - 조계종 스님과 집행간부 471명, ‘5·18학살자 심판촉구’ 성명발표

9/4 - 예장 목회자 550여명, '5·18내란주동자의 처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9/5 - 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5·18결의문 채택하고 특별법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함.

9/6 - 언노련, 기자협회, PD연합회 공동주최로 '광주학살 심판촉구 시민대토론회' 개최

- 민노총(준), 민변, 여성단체연합, 사제단, 전국연합 등 실무연석 회의를 개최하고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함.

9/11 - 5·18국민위원회, 전국연합, 민변 등,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한 '5·18성명서' 발표

-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5·18특별법 제정촉구 국회 앞 집회' 개최

9/12 - 광주 남총련 대학생 5백여명, '민자당 광주시지부 항의방문'

9/13 - 5·18국민위, 전국연합 등 지도부, 서울도심에서 '5·18관련특별법 제정촉구 가두서명'

9/16 - 5·18국민위, 5·18시민사회연석회의, 오후 2시 여의도 광장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학살자 특별법제정 4차국민대회' 개최. 전국적으로 광주, 부산 등 6곳에서 개최

9/18 - 고려대 학생 40여명, 5일간 시한부 단식농성 돌입

9/20 - 연세대 학생 4천여명이 서명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 민주당,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안미련 발표

9/22 - 5·18국민위, 광주공대위, 전국연합 28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 새정치국민회의, 5·18관련 '3개 법안 국회제출'

- 전남지역 교사 4백 7명, '5·18관련 성명발표'

9/23 - 민주당,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확정 국회제출

9/25 - 광주지역 3천1백8명, 전북지역 8백24명, '5·18성명발표'

- 기독교청년학생, 5·18특별법 제정과 학살자처벌을 위한 '철야금식기도회' (~30)

9/26 - 서울대총학생회 간부, 5·18특별법제정과 관련자처벌 등을 촉구하며 3일 동안 '단식농성' 돌입

9/26 - 전북지역 천주교와 원불교 등 전북지역 4개종단 연합 대표자 14명, '전북지역 종교지도자선언문'을 발표

-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충북지부, 5·18책임자재판회부와 특별법제정요구 ‘단식농성’ 돌입

- 성균관대 총학생회간부, 5·18특별법제정을 촉구하며 5일간의 ‘단식농성’ 돌입

9/27 - 전북지역 13개 대학 교수 1천4명, ‘5·18주동자구속기소와 특별법제정 성명’ 발표

9/28 -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사 1천5백여명,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서울교사선언’ 발표

9/29 - 한총련, 29·30 양일간 ‘5·18총궐기 동맹휴업’

9/30 -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5·18내란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전국대학서명 교수 모임’(전국 6천4백여명) 발족식

- 서울 장충단 공원 ‘5·18학살자 특별법제정 5차국민대회’ 개최, 전국 13개 지역 동시개최

- 인천지역 초·중·고교 교사 2백85명, ‘우리의 요구’라는 성명을 통해 5·18재수사를 촉구

10/2 -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부장검사), 민변이 지난 7월 제출한 전·노 등 5·18관련자 7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착수

10/6 - 경기지역 교사 1367명, ‘5·18선언’

- 기독교예수교 장로회, 신도대상 ‘5·18서명운동’ 돌입

10/9 - 5·18국민위원회 공동대표단,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 박일 대표 면담

10/10 - 노태우의 ‘5·18은 중국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망언 이후 시민사회 단체 일제히 규탄성명발표

- 평택지역 사회단체정당 100인, ‘5·18특별법 제정촉구 선언’ 발표

- 부산지역 교사 1032명, ‘5·18선언’ 발표

- 포항지역 시민, ‘5·18성명’ 발표

- 부산지역 1980인,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제정을 위한 1980인 선언’ 발표

- 서명교수모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방문하여 ‘5·18특별법 제정 촉구’

10/12 - 시민사회단체, 정오부터 서울 11군데 등 ‘전국 공동가두서명’ 을 진행

- 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914명, ‘5·18서명’ 에 참여

10/13 - 전남지역 농민 2천여명, ‘5·18선언’ 발표

10/14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5,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정권 실정규탄

과 민주개혁쟁취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

10/16 - 한총련 '5월 학살자 전두환노태우 처벌과 특별법,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구국결사대' 13명, '민자당사 기습점거 후 전원 연행됨'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0여명, '5·18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시위 및 가두서명' (교대지하철역 주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명동성당 시국기도회 및 촛불시위'

- 5·18 국민위원회 공동대표단, 자민련 한영수 원내총무와 면담

- 부산경남지역 의사 322명, 대전지역 교사 152명, '5·18 선언' 발표

- 5~60대 노장변호사들, 법률신문을 통해 5·18특별법제정을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변협'의 특별법제정 촉구서명운동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을 전개

10/17 - 서울시 의원 1백명, 5 '18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기소촉구 시한부(~19) 농성' 돌입

- 서울시 의원 96명(국민회의 74명, 민주당 21, 무소속 1명), '5·18서명'

- 5·18특별법 제정촉구 시민사회연석단체, '민자당사 항의방문'

- 인의협 등 전국 의사 2천3백76명, '5·18특별법제정촉구 성명서' 발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1백여명, '국회의사당 앞 집회성명' 발표

- 민중화가 임옥상씨 '5·18포스터 부착 중 연행'

- 남총련, 광주 아메리칸 센터원장에게 '5·18학살자 기소촉구서명운동' 동참요청 편지전달

- 강원총련, 민자당 춘천 이민섭 의원사무실 앞 '항의시위'

10/18 - 경인총련, 민자당 인천계양구 지구당 '항의시위'

- 서총련, 민자당 성북갑 지구당 '항의시위'

- 전북지역 치과의사회 소속 의사 194명, '5·18성명' 발표

-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 977명, '5·18특별법 제정촉구 성명' 발표

10/19 - 캐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30여명, 캐나다 방문중인 김영삼대통령 숙소인 로열요크호텔 앞에서 2시간동안 '침묵시위'

- 월간조선 11월호, 전두환 5·18관련 답변서 공개 '5.17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는 국민연합-전국총학생회장단이라는 지휘체계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된 전국규모의 조직적 정부타도운동 때문'이라고 주장

10/20 - 김광현 여수시장 등 여수지역 인사 172명, '5·18특별법 제정촉구 시국선언' 발표 후 거리행진

- 대구지역 초·중·고 78개교 현직교사 217명, '5·18특별법 제정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 대전지역 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 163명, '5·18특별법제정을 정부에 촉구'
- 이해학 목사 등 경기성남지역 인사 265명, '5·18특별법제정촉구 성명서 발표서명운동' 돌입
- 10/21 - 인천시의회, '5·18특별결의문' 채택
-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회원 15명, 민자당 대구경북지부에 '항의서한' 전달
- 전국 42개 대학 법학교수 127명, '5·18관련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13시를 기해 81일 동안 계속 해 온 수협 앞 천막농성 해제
- 10/22 - 5·18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신림동 고시 수험생 서명추진모임, '5·18서명 2,067명'
- 10/23 - 신창균, 계훈제, 김중배, 사회원로 38명이 서명한 5·18의견서를 발표
- 10/24 - 제주지역 초·중·고 교사 173명, '5·18관련자 불기소처분과 관련한 성명'
- 10/25 - 서울지검 공안1부, 민변이 지난 7월 21일 '전두환·이희성 등 7명이 88~89년 국회청문회에서 5·18과 관련해 위증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충일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정복량 총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유재천 총회장 등 기독교계인사 7명, 황낙주 국회의장 등을 만나 5·18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과 교인 3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
- 10/26 -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사법연수생자치회, 5·18 책임자불기소처분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발표' (74%인 170명이 기소해야.)
-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5·18위증 공소권 없음과 관련한 '성명발표'
- 10/29 - 광주시, 5·18을 올해 안에 시기념일로 제정한 뒤 정부에 국가기념일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키로.
- 10/30 -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지역 30여개 단체,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10/31 - 기독교연석회의,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기독교인대회 개최(1,500여명, 기독교회

연합회관→탑골공원) 후 전두환. 노태우 집 앞 항의시위

11/ 1 - 충남 예산 '참다운 지역자치를 원하는 책마당' 등 23개 종교사회문화 단체, 5·18특별법제정과 학살책임자 '기소 촉구 성명' 발표

11/ 3 - 4.19와 6.3세대 4백여명, 5·18관련자의 즉각 구속과 노태우前대통령 부정축재 재산몰수 '시국선언문' 발표

11/ 4 -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노태우구속과 92년대선 자금공개, 5·18특별법제정 제 6차 국민대회' 와 '제 1 차 국민행동의 날개최, 전국적으로 20개 지역에서 행사가 치러짐.

11/ 7 - 금융권과 공공부문 1백여개 노조가 참여하는 '5·18학살자처벌 특별법 관철을 위한 노조대표자서명추진위원회', 연대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대표자 1천명 돌입

11/10 - 연세대 교수평의회, '대통령, 검찰, 국회, 사법부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발표

11/11 - 5·18특별법제정, 노태우 구속, 대선자금공개촉구 제7차 국민대회 개최

11/16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안충석, 문규현, 장용주 신부 등 1백여명), 7시30분 명동성당에서 '정부 도덕성 회복 촉구와 5·18광주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국기도회'개최.(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제안)

- 노태우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수감

11/21 - 5·18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5·18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앞 '집회' (21~)

11/24 - 김영삼대통령, '5·18특별법제정을 민자당에 지시'

11/25 - 5·18특별법제정.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촉구 제8차 국민대회 개최

11/27 - 5·18범대위, '5·18특별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11/28 - 한총련, 5·18특별법제정촉구 대규모집회 및 시위

- 국민회의와 민주당, 현재에 5·18 결정 선고 연기요청

11/29 - 5·18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국회의원회관에서 5·18특검제 공청회 개최

- 5·18헌법소원제출자, 헌법소원취하

12/ 2 -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대국민성명발표 후 고향인 합천으로 도주

- 전국연합,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5·18특별검사제도입촉구 및 공안탄압규탄 결의대회' 개최

12/ 3 - 전두환 전 대통령, 합천에서 검찰수사관에 의해 구속이 집행되어 안양교도소

에 수감

- 5·18당시 총상자 2인, 미국에 치료받게 됨.

12/ 5 - 5·18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5·18범국민단일안 마련’ 발표

- 민자당, 5·18특별법제정관련 대구경북지역의원 반발

12/ 6 - 80년 계엄포고령 위반구속피해자모임,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회장 이우재)’ 구성

- 남총련, (가칭)신한국당(구 민자당) 광주전남지부 앞에서 시위

- 검찰 특별수사본부, 12·12와 5·18조사 병행조사키로

12/ 9 - 12·12, 5·18 관련자 전원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제9차 국민대회개최(전국 10개 지역)

- 소준열, 전남일보인터뷰를 통해 '전두환, 5·18 당시 공수부대에 사기를 죽이지말라는 친필편지발송' 증언

12/11 - 자민련, 특별법 공식 반대 입장 기자회견

- 김관석, 강원룡 등 기독교원로 11명, ‘5·18시국선언’

12/12 - 현시국에 대한 각계각층 원로 30인 성명발표

- 전국연합, 자민련 항의방문(13:30)

- 5·18내란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대학 서명, 교수모임, 범국민위원회 설치촉구

- 민변, 불기소사건관련 국가와 담당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2/13 -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5·18관련성명을 통해 80년 해직언론인의 원직복직과 피해배상을 촉구

- 헌법재판소, 5·18 헌법소원 자동종결

12/14 - 민변, ‘5·18관련 특별법제정에 관한 의견’ 국회에 제출

12/15 - 헌법재판소, 5·18 헌법소원발표(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부당)

12/16 - 최규하,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의 조사를 공개적으로 거부

- 5·18범대위 300여명,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검제 도입촉구 집회 ‘ 개최

12/18 - 5·18범대위 50여명,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12/19 - 5·18범대위, 국민회의·민주당과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회담’

- 국회, 여야 합의로 ‘5·18특별법제정’

12/21 - 5·18범대위, 5·18특별법제정 운동 ‘성과보고대회’ 개최

- 명동성당농성단, 158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해단식’ 가짐.

여순사건 소송 현황과 미신청 사례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회장)

1. 여순사건 명의의 진실화해위원회 신청과 진실규명 현황

단위 : 명

	신 청	진실규명	비 고
여 수	111	126	
순 천	205	258	
광 양	43	64	
구 례	154	186	
고 흥	41	43	
보 성	44	49	
기타 지역	91	141	
계	689	867	대표신청 포함

진실화해위원회에 여순사건 명의로 접수된 신청인은 총 689명이었으나, 이중 진실규명이 확인된 것은 여수 126명, 순천이 258명, 광양 64명, 구례 186명, 고흥 43명, 보성 49명, 기타지역 141명으로 모두 867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당초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결과는 신청인 조사에 국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순사건의 지역별 피해추정 현황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사건 조사 결과 확인 또는 추정된 여순사건 지역별 희생자 수

와 추정한 희생규모를 보면 순천 2,000여명, 여수 1,300명, 구례 800여명 등 전남 지역이 최소 6,600여명이고, 전북, 경남을 포함해도 7,500명인 불과해, 이 또한 사건 당시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희생규모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여순사건의 지역별 피해추정 현황〉

단위 : 명

지역	사군	희생규모(추정)
전남	순천	2000여 명
	여수	1300여 명
	구례	800여 명
	보성·고흥	400여 명
	광양	400여 명
	곡성	100여 명
	화순·나주	200여 명
	함평	100여 명
	해남	100여 명
	광주	20여 명
	완도	200여 명
	장흥	20여 명
	영암	50여 명
	담양·장성	20여 명
	진도	10여 명
	영광	60여 명
	신안	10여 명
	강진	20여 명
	소계	최소 6600여 명
전북	고창	
	임실	50여 명
	순창	
	소계	최소 50여 명
경남	함양	300여 명

	산청	300여 명
	거창	100여 명
	하동	100여 명
	사천	20여 명
	합천	20여 명
	함안	20여 명
	진주	20여 명
	소계	최소 880여명
14연대		
미상		
계		최소 7500여명

※ 희생규모 추정 7,500여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종합보고서에서 신청사건 조사결과, 확인 또는 추정 한 여순사건 지역별 희생자 수와 추정한 희생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정부의 여순사건 피해 현황 비교

단위 : 명

조사기관	진실화해위원회	전라남도 (A)	정 부(B)	정 부(C)	전라남도 (D)
조사기준일	2010. 6.30	1948.11. 1	1948.11.20	1949. 1.10	1949.11.11
피해인원 (차이)	867 (-)	4,974 (4,107)	3,260 (2,393)	5,530 (4,663)	11,131 (10,264)

A : 전남도(보건후생당국) 발표, 호남신문(1948. 11. 5)

B : 정부(사회부)가 조사한 '반란군이 자행한' 피해규모, 국회속기록 제2회제13호(1949. 1.25) 243-245쪽

C : 중앙청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현지조사 후 보고한 피해상황, 동아일보(1949. 1. 22)

D : 전남도가 조사한 여순사건 이후의 도민 피해, 호남신문(1949. 11. 11)

3. 진실규명에 따른 소송 현황

가. 사건유형별 소송현황(집단소송)

단위 : 명

사건별	신청	승소	패소	비고
여순사건	54	49	5	대법 승소판결 16.07.29 배상금 수령
여수지역 보도연맹사건	36	36	-	15.07.09 대법 승소판결 15.12.12 배상금 수령
여수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34	25	9	1심 승소자 25명 광주고등법원 11.21 공판
순천·보성· 광양·고흥지역	127	107	20	여순사건, 형무소재소자 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사건 포함
계	251	217	34	

진실규명에 따른 소송은 124명의 희생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중이며, 유형별로는 2012년 8월 보도연맹 희생사건에 대한 소송(강송명 외 199명)을 시작하였으며, 여순사건 여수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소송(오창순 외 264명, 5.20. 손정자 외 165명, 6.21. 서소엽 외 7명, 9.17. 최순자 외 23명)이 2013년 3월에 이어졌고,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이귀자 외 29명)은 2013년 5월에 소송을 시작하였다.

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2015년 12월 12일 전원 승소판결을 받았고, 여순사건의 경우 올해 7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으나, 49명이 승소하고 5명이 패소하였다.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의 경우 현재 2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며 34명 중 25명이 승소하고 9명이 패소하였다.

순천유족회의 경우 순천·보성·광양·고흥지역 유족들이 사건 유형별로 구분없이 127명의 희생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120명이 승소하고 20명은 패소하였다. 구례지역은 대부분 법적소송 기일인 3년을 초과하여 유족회에서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정확한 소송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 패소 원인

패소 원인은 여순사건 여수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법적소송 기일을 초과하여

소송에 참여한 5명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고,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의 경우 사망원인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9명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순천·보성·광양·고흥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는 사망원인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4. 미신청 사례

소송에 미신청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진실규명 후 법정소송기일 3년이 경과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일부 유족의 경우 진실규명 과정 중에 유족이 사망하여 2대(혹은 3대)에서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후 뉴스를 통해 유족들의 승소소식을 접하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효가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유족회를 통한 집단소송 이외에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유족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다.

